

# 조선총독부 관료의 민족구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 — 민족문제와 민족격차의 내포 —

오카모토 마키코(岡本眞希子)

I. 들어가며

II. 조선총독부의 규모·계급과 민족구성

III. 本府의 민족구성

IV. 지방청의 민족구성

V. 나오며

### I.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기 조선에 설치된 조선총독부 관료군의 민족구성에 대한 기초적 분석을 수행한다. 종래 식민지기 조선의 역사에 관해서는 ‘지배정책사 對 민족운동’이라는 이항대립 도식으로 그려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근년에는 이러한 이항대립 도식으로 회수되지 않는 ‘식민지인식의 ‘회색시대’<sup>1)</sup>’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특히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조선의 지방 諮問·決議 기관의 조선인 의원, 말단 행정기구의 조선인 관료 및 하급직원 등, ‘정치참여’ 및 ‘통치기구에 참가’를 지향한 조선인들이다<sup>2)</sup>. 한편으로 지배정책사에서는 관료조직 내부의 다양한 양태가 밝혀지고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각각의 총독에 착목하여 당해 시기의 조

1) 윤해동, 2002.5 <植民地認識のグレーゾーン> 《現代思想》(靑土社), 참조

2) 이러한 측면에 관한 연구 상황과 그것이 잉태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岡本眞希子 2010 <植民地期の政治史を描く視角について－體制の内と外, そして ‘帝國日本’> 《思想》(岩波書店) 1월호 게재 참조.

선총독부의 동향이 분석된 것에 비해서 근년에는 총독 이외의 고급관료 및 기술관료와 같은 히는 개별 관료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축적이 진행되고 있다<sup>3)</sup>. 또한 식민지통치기구를 지탱한 제도 및 기구에 관한 연구의 축적도 진행되고 있다<sup>4)</sup>. 그러나 분석대상이 된 관료의 조선총독부 내에서의 위치 및 관료 조직 내부의 조선인과 內地人<sup>5)</sup>의 상관 관계와 같이 배경이 되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채로 개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는 근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료의 계층에 착목하면서 조선총독부 관료의 민족 구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감도를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Ⅱ. 조선총독부의 규모·계급과 민족구성<sup>6)</sup>

조선총독부는 제국 일본의 관료기구 가운데서도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 관청이었다. 예를 들면 1926년 말일 현재의 시점에서 본국·식민지 전 관청의 관료수(國費支辨職員)의 총계 148,014명 중 조선총독부는 28,657명으로 전체의 약 19.4%의 비율을 점하고 있었다<sup>7)</sup>.

조선총독부를 포함하여 제국 일본의 식민지 관료제도는 본국 관료의 신분질서를 도입한 것으로, 관등에 따라 천황으로부터의 신분적 거리가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관리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는 高等官과 判任官으로 나누어진다(상단일수록 신분이 높다). 고등관은 親任官을 제외하고 1등에서 9등으로 나뉘는데, 고등관 1·2등은 勅任官,

3) 松田利彦·やまだ あつし 편, 2009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思文閣出版).

4) 제도·기구에 착목하면서도 주로 고급 관료군의 이동동태를 분석한 것으로, 岡本眞希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朝鮮・臺灣總督府と帝國日本》(三元社, 2008)이 있다. 그리고 제도·기구에 관한 선행연구에 관해서는 前掲 岡本 2008년의 序章·제5장 및 松田利彦 <朝鮮における植民地官僚－研究の現状と課題> (전계 松田 외 편, 2009) 25~26 참조.

5) 본고에서는 일본인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戰前 일본에서 사용된 호칭인 內地人을 사용한다. 전전기 일본에서 ‘일본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대외적으로는 일본 국적 보유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고 당시 호적의 변별에 따라 내지인·조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6) 본장은 岡本眞希子 <解説 朝鮮總督府・組織と人> (宮田節子 감수, <未公開資料 朝鮮總督府關係者録音記録(3) 朝鮮總督府・組織と人>《東洋文化研究》 제4호,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2002년) 및 전계 岡本 2008년의 제1장 및 제4장을 기초로 집필하였다.

7) 內閣統計局 編纂, 1927 《第四十六回日本帝國統計年鑑》(內閣統計局) 598~599

고등관 3~9등은 奏任官이다.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이 계급 제도는 본국에서도 식민지에서도 출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관료에게는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에서 각 계급의 구성은 어떠하였을까? 우선 전 직원수인데(자료 1)·(자료2)참조), 囑託·雇員까지 파악할 수 있는 1913년을 보면 2만3천명이 조금 넘고,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1942년의 시점에서는 10만명을 넘는 규모로 관료조직의 팽창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조선인 직원수가 일정 정도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내지인 관료수를 능가한 적은 없었다. 다음으로 각 계급의 민족 구성을 보자. 親任官·勅任官의 경우(자료1 참조), 조선인은 1913년 39명에서 1942년 38명으로 거의 정체 상태이며, 내지인은 1913년 44명에서 1942년 129명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양자의 양적 격차는(자료3 참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다. 奏任官에서(자료1 참조) 조선인은 1913년에 305명에서 1942년 404명으로 약 100명이 증가하며 내지인은 1913년의 700명에서 1942년의 1883명으로 1,200명이 조금 못되게 증가했다. 양자의 격차(자료4 참조)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判任官의 경우 (자료1)참조) 조선인은 1913년 4,048명에서 1942년 15,479명으로 증가하여 약 11,400명이 증가하였고, 내지인은 1913년 7,708명에서 1942년 32,627명(자료1)참조)으로 약 24,900명이나 증가했다. 여기에서도 양자의 양적 격차는(자료5 참조) 점점 넓어졌다. 이것들과는 반대로 雇員에서 조선인 고원은 1913년 4,651명에서, 1942년 29,162명으로 증가하여(자료1 참조) 내지인 고원을 능가하고 있다(자료6). 조선인 전 직원수를 보면(자료2 참조), 1930년대 후반의 총력전체제기에는 내지인 직원수에 육박하는 기세를 보여 내지인·조선인의 관계가 拮抗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급별로 보면 조선인 직원의 증대 부분은 雇員이 차지하고 있고 상층부일수록 내지인수가 증대하여 우위가 유지된 채로 조선인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총독부 本府와 지방청의 민족구성을 개관한다. 조선 총독이 근무하고 각 局이 설치된 지배 기구의 중심인 본부에서는(자료7)참조) 어느 계급에서도 일관되게

내지인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 조선 규모로 支局과 分署를 가진 철도·체신·전매·세무 등 현업직원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소속관서에서는([자료8]참조). 고등관·판임관에서는 내지인의 양적 우위가 확보되어 있는 한편, 특히 전시하 현업부문에서의 조선인 촉탁·고원의 증대가 확인된다. 道·郡 등의 지방청에서는([자료9]·[자료10]) 내지인 고등관 수의 증대와 조선인 고등관 수의 정체상태, 판임관급에서의 조선인·내지인의 증대 및 내지인에 대한 조선인의 비율이 전시하에서도 2/3를 조금 넘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촉탁·고원에서는 항상 조선인이 다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부에서의 내지인의 점유, 지방청에서도 내지인 고등관의 증대, 현업기관·지방청에서의 조선인 하급 직원의 증대, 지방청에서의 조선인 관료군의 존재 등과 같이 본부·지방청이라는 하는 근무지에 따라 또 관리의 계급에 따라 민족구성이 상이하였다.

이제 각 계급 급여의 민족간 격차의 유무를 보자. 조선총독부 관료의 급여는 本俸과 諸手當의 두 종류로 구성되는데, 본봉은 본국의 諸官廳 및 여타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高等官官等俸給令’으로 규정되어 있다<sup>8)</sup>. 한편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조선인 관료의 본봉은 ‘조선인 文官의 分限 및 급여에 관한 건’[1910년(明治43) 칙령 제430호]로 규정되어 민족별 봉급제도를 취하고 있다. 조선인 관료의 급여는 내지인 관료보다도 낮게 억제되어 양자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었으나<sup>9)</sup>, 3·1독립운동 이후 ‘문화정치’기인 1919년 10월 본봉의 민족별봉급제도는 폐지되었다. 본봉은 관등과 보직에 따라 엄밀하게 규정되었다([자료11] 참조). 또한 친임관인 조선총독은 본국의 大臣과 같았고 칙임관 1·2등에 해당하는 본부의 각 국장은 본국의 정무차관과 같았으며, 도지사는 칙임관 1·2등에 해당하고 본국의 각 부현 지사와 같게 하는 등 본국의 각 省의 서열에 비하여 손색없는 관등과 급여가 보장되었다.

내지인 관료에 대해서는 본봉만이 아니라 별도로 우대수당이 지급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植民地在勤加俸(‘外地加俸’ ‘외지수당’ 등으로 불리는데)이다<sup>10)</sup>. 이 제도는 조선在勤者에게 본국 재근자에 비해 고등관은 5할, 판임관은 6할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자료12] 참조) 내지인에게는 근무지에 따른 급여 격차로 인식되었다. 이 제도는 처음 대만총독부에서 실시되었다. 청일전쟁으로 영유한 대만에 급히 설치된 대만총독부에 관료를 끌어모으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식민지에 招來하기 위해” “식민지 재근의 노고에

8) <高等官官等俸給令中改正> [1910년(明治43) 칙령 제377호]. 1910년 10월 1일 시행.

9) 김민철, <朝鮮總督府職員錄解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10) 植民地在勤加俸의 제정과정과 변천, 조선 및 대만인으로부터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계 岡本 2008년의 제4장 2절, 제9장, 10장을 참조.

보답하기 위해” 라는 등의 이유로 도입되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조선총독부에도 적용되었다. 대만총독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만인을 관리로 등용하지 않고 내지인들이 전부 점유했기 때문에, 민족격차 문제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1920년대 이후였다. 그렇지만 法文상 적용대상을 내지인이라고 명기하고 있던 이 제도는, 내지인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조선인 관료(예를 들면 문관고등시험 합격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았듯이 그 적용 기준이 민족에 따라 변별되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내부에서 내지인·조선인 관료간의 급여 격차는 눈에 확 띄게 되었다. 이 외에도 恩級在官年加算制度, 宿舎料 지급<sup>11)</sup> 등 내지인 관료에게만 적용된 우대 제도가 설정되었다. 이들 제도는 내지인 관료로 하여금 조선인 관료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본국 재근자에 대해서는 식민지 재근자라는 ‘勞苦’ 의식을 지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인 관료측에서 본다면, ‘一視同仁’, ‘內鮮一體’론 등과 모순되는 격차를 일상적으로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때문에 가령 1930년대 초두 본국 정부가 식민지재근가봉의 삭감을 시도했을 때,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관료와 내지인 관료는 서로 다른 동향을 보였고, 조선총독부 상층부는 양자의 분열 표출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 억눌렀던 적도 있었다. 조선총독부 내부에는 민족별로 상이한 의식과 이해를 가진 개인과 집단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측면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 Ⅲ. 本府의 민족구성

이하에서는 관리의 계급순으로 본부의 구체적인 보직과 함께 민족구성을 살펴보자.

우선 톱의 지위에 총독이 있는데, 임시대리총독(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이나 같은 인물이 두 번 취임(우가키, 사이토 마코토[齋藤實])한 것을 한 사람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면 전부 10명이 취임했으며 모두가 내지인이었다([자료13]·[자료14] 참조). 총독의 임용 자격은 ‘朝鮮總督府官制’로 규정되었다. 1910년부터 1919년에는 武官專任制, 1919년 이후에는 문관도 임용 가능한 文武官併任制로 바뀌었지만, 조선 총독으로는 무관이 계속 취임하였다. 다만 문관의 총독 임용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1919년에는 오랫동안 정무총감이었던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가, 또한 1929년에는 대만 총독 경험자로 내무 관료계의 이자와 다키오(伊澤多喜男) 등이 구체적인 후보가 되었

11) 전계 岡本 2008년의 제4장 3절(3), 제4절(2) 참조.

던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본국의 정치 세력 간 알력과 조선 통치를 정당 정치의 외부에 두고자 하는 여론 및 쇼와 천황의 의향 등도 있어서 묻혀버렸던 경위가 있다. 그리하여 1927년부터 1945년까지의 야마나시(山梨), 사이토(齋藤), 우가키, 미나미(南), 고이소(小磯), 아베(阿部)의 전 총독은 취임시 예비역 편입조치를 했거나 예비역 군인에서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현역군인에서 임용되지는 않았다.

넘버2의 지위는 친임관인 정무총감이다([자료13]·[자료14]참조). 전부 10명이 취임했는데 이들도 모두 내지인이었다. 총독의 보좌역인 정무총감은 기본적으로는 총독과 거취를 같이 했는데, 1920년대 본국의 정당정치기에는 총독 인사와 맞물려 정당 내각의 의향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본국과 조선총독부와의 마찰의 초점이 되기도 하였다<sup>12)</sup>. 또한 조선인측에서는 정무총감을 2인 설치하고 그 중 1인을 조선인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있었지만<sup>13)</sup> 실현된 적은 없었다.

다음으로 국장이다. 국장은 칙임관이며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관리에게 출세의 갈림길이었다. 국장들도 2명을 제외하고는 내지인이 취임하였다. 조선인 국장으로는 李軫鏞(1924년 12월~1929년 2월), 嚴昌燮(1944년 8월 17일 취임) 2명이 학무국장에 임명되었을 뿐이다. 최초로 조선인이 국장에 등용된 것은 사이토 총독기인데, 이 인사를 즈음하여 조선인의 ‘重用’이 크게 선전되었다. 이진호의 국장 취임은 전술했던 조선인 정무총감 기대론을 낳았고, 이진호 국장하에서 교육에 대한 요망을 들고나오는 조선인이 많았기 때문인지 사이토 후임인 야마나시 총독기에는 이를 꺼려하여, 대체 포스트를 설치하여 국장에서 끌어내리고자 획책하였다. 대체 포스트로는 총독·정무총감의 자문에 응하는 칙임관인 ‘參與官’을 본부에 신설하는 것이었다. 야마나시 총독이 사임하고 사이토 총독이 다시 취임했을 때는 사이토 총독과 고다마(兒玉) 총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장으로 轉任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도는 본국 추밀원과 각축의 와중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 후 1944년까지, 국장이라는 포스트가 조선인에게 분배된 적은 없었다<sup>14)</sup>.

본부의 과장급 민족 구성은 어떠했을까? 과장에는 사무관 혹은 철도·체신국 등의 현

12) 이상의 인사 이동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는 전계 岡本 2008년의 제8장을 참조.

13) <有吉總監 朝鮮の批評>·<知事位では不満足だ 鮮人の總監を望む> (《東京朝日新聞》1922년 6월 17일), <倉富勇三郎日記> (國立國會圖書館所藏 倉富勇三郎 관계문서) 1928년 12월 10일(조). <朴重陽について> (전계 《東洋文化研究》 4) 314. 전계 岡本 2008년 504, 519.

14) 조선인 국장 취임문제와 대체 포스트(‘本府參與官 구상’)에 대해서는 전계 岡本, 2008 519~521, 536~538 ; 岡本眞希子, 2000 <總督政治と政黨政治>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8, 42~44

업부서의 일부에서는 技師가 취임하고 있다. 사무관의 관등은 고등관 2~7등으로, 칙임관 혹은 주임관에 해당되었다(자료11)참조). 技師도 또한 고등관 2~7등의 주임관이었다(자료11)난외주3, 참조). 1920년~1940년까지 본부의 부·국에 설치된 전 과장에 대해 민족별로 표시한 것이 [자료15]이다<sup>15)</sup>. 매년 특정 시점에서의 定點觀測的인 진용이기는 하지만 전체의 경향은 알아볼 수 있다. 즉 이 사이에 과장에 취임했던 조선인은 겨우 학무국 종교과장 혹은 그 후신인 사회과·사회교육과장에 매년 1명뿐이며 기타 전체의 과장은 내지인이 점유하고 있었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전시체제가 심화되자 관료 조직의 팽창과 포스트의 증설에 따라 부·국의 과장 수는 증가하여 1920년의 45명에서 1940년에는 75명으로 증대하였다. 그러나 이 증가 부분은 내지인이 점유하였고, 이것이, 전술했던 本府에서의 내지인 고등관 증대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0년 이후이기는 하나 1944년 12월 현재 조선인 관리의 ‘拔擢登用’의 本府 사례로서 총독부 관방조사과장·재무국 연초과장·광공국 근로과장·학무국 조사과장의 4과가 거론되고 있는데<sup>16)</sup>, 종래에 비하여 겨우 3명 증가하였다는 것은 확인 가능하다 .

#### IV. 지방청의 민족구성

조선의 지방제도로는 道·府·邑·面·郡·島가 있고(표 16)참조) 약 10년 간격으로 큰 제도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들 지방청의 고등관의 경우 한국병합 당초에 道長官·郡守·道參與를 대상으로 조선인 관리를 임용할 수 있는 특별임용령이 제정되어 試驗任用에 의하지 않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임용을 가능해졌다.<sup>17)</sup> 이 특별임용령은 1920년대의 ‘문화정치’기가 되면 임용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였고,<sup>18)</sup> 본부의 사무관(과장급 등), 각도의 도사무관(도청의 부장급 등), 도이사관(도청의 과장급 등) 등도 제도적으로는

15) 1920년대에 조선인 등용이 정책으로 크게 선전된 ‘문화정치’기부터 ‘창씨개명’에 의해 조선인과 내지인의 씨명을 변별할 수 없게 된 1940년 2월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16) <阿部總督時代の概觀> (전계, 2000 <東洋文化研究> 2, 223~224의 宮本正明이 작성한 주 5)에 의한다. 근거 출전은 <第86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94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 10(不二出版)]

17) ‘조선인의 조선총독부 도장관 및 참여관 및 군수에의 임용에 관한 건’[1910년(明治43) 칙령 제383호].

18) ‘조선총독부사무관 등의 특별임용에 관한 건’[1921년(大正10) 칙령 제26호]. 이들 특별 임용의 변천에 관해서는 전계 岡本, 2008, 251~259 참조. 1921년, 1924년에 두번 개정되었다.

특별임용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은 13개의 도로 구성되었고, 각 도에 1명씩, 1910년대에는 도장관이, 1920년대 이후에는 도지사가 임명되었다. 도장관·도지사 모두 칙임관이었다. 장관·지사의 인사를 살펴본 것이 [자료17]이다. 지사는 조선인이 항상 일정 정도 임명되고 있는데, 13개 도 가운데, 한국병합 직후에는 조선인이 6명 취임하였고, 1914년 이후에는 조선인 5명·내지인 8명으로 비율이 고정되었다. 양자가 부임하는 道가 바뀐 적은 있어도 양자의 비율은 그대로였다.

다음으로 각 도청의 부장·과장급의 민족구성을 보자. 13개 道에는 각각 도청이 설치되었다. 1930년대를 예로 보면 道에 따라 혹은 시기에 따라 구성은 달라도 내무·재정·산업·경찰 중 2부~4부제를 취하고 그 아래에 課를 설치하고 있다([자료18]참조). 도청의 부장에는 고등관 3~7등의 주임관인 도사무관이 배치되었다. 각 지방청의 과장에는 이보다 관등이 1등 낮고 급여가 2급 정도 낮은 고등관 4~8등의 주임관인 도이사관이 배당되었다([자료11] 참조). 1930년대 각 도청의 부장·과장의 진용을 定點觀測의으로 민족별로 표시한 것이 [자료18]이다.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은 道廳의 부·과장 대부분을 本府의 국·과장과 마찬가지로 내지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인의 경우 道와 시기에 따라 경찰부 보안과장·위생과장 등에도 취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산업부장·산업과장이 ‘지정석’이었고, 설사 지방청이더라도 다양한 직종에 임명될 수 없었다. 1930년대의 부장·과장의 민족별 비율([자료19] 참조), 부장에서는 내지인 85%, 조선인 15% 전후의 비율로 추이했다. 과장은 1931년 총 113과에서 1939년에 172과로 약 60개 과가 증가했는데, 조선인 과장 수는 11~13과에 머물렀고 증가된 과장 포스트도 내지인이 점유하고 있었다. 내지인 과장의 비율은 높아졌다. 1940년 이후가 되면 1944년 12월 현재 조선인 관리의 ‘拔擢登用’의 지방청 사례로서<sup>19)</sup> 부장에서는 경찰부장·내무부장이 각 1명, 광공부장 7명, 농상부장 6명, 재무부장 5명이 있다. 전 도에서 개편·신설된 부장 포스트(광공·농상·재무)<sup>20)</sup>의 반이 조금 못되는 자리를 조선인 부장이 차지하고 있다. 종래부터 경찰·내무부장에는 각 1명씩 등용되고 나머지는 내지인이기 때문에 전체로서는 내지인 부장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었다. 다만 부장 포스트에서의 조선인의 증가는 지적할 수 있다.

郡에 대해 살펴보자. 1920년대 이후 조선 전체에서 218개의 군이 설치되었는데, 각 군

19) 앞의 주 16과 동일.

20) 1943년 9, 12월의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 중 개정’[1943년(昭和18) 칙령 제747호, 896호]에 따라, 9월에 食糧部를 신설하였고, 12월에는 재무부를 부활하고 또 산업부·식량부를 폐지한 후 광공부·농상부를 설치.

에 1명의 군수가 임명되었다. 군수는 고등관 4~8등의 주임관에 해당한다([자료11]참조). 5년 마다 진 군수의 민족 구성을 정점관측적으로 표시한 것이 [자료21]인데, 조선인 군수는 1920년 90% 이상을 점하다가, 1939년에는 85%로 감소하고 내지인 군수는 조금 증가하고 있다. 내지인 군수의 경우 충청남도의 공주군, 연기군, 대전군 등과 같이 나중 에 읍으로 승격되어가는 指定面 등이 있고, 내지인 集住地區를 가진 군이 주요한 부임지 였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지금까지 1930년대까지의 도청, 군의 민족별 구성을 보아왔는데, 양자를 포함하여 1940년대에 대하여 살펴보자. 職名은 상관없이 부과장·군수를 포함한 道·府·郡·島의 고 등관 수(척·주임관의 합계)는 ([자료20]참조), 조선인은 1941년 225명에서 1943년 276명 으로 50명이 넘는 증가를 보이는데, 내지인은 1941년 222명에서 601명으로, 약380명이 격 증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道廳에서의 조선인 부장의 증가는 지적할 수 있지 만 1940년대조차도 내지인 고등관의 우위를 뒤집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겠다.

끝으로 면장을 보자. 面長·面吏員 등의 면직원은 國費 支辨의 정규 관리는 아니다. 하 지만 면은 특히 전시체제하에서는 행정기구의 최말단에 위치하면서 각종 전시행정을 대 행하여왔고, 근년의 조선인 하급관리·직원에 관한 연구도 주로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요한 존재였다.<sup>22)</sup> [자료21]은 5년 마다의 전면장의 민족구 성을 정점관측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1920~1930년대를 통해 일관되게, 99% 전후를 조 선인 면장이 점하고 있다. 내지인 면장도 1920년대에는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1930년대에 들어와 읍으로 승격하고 읍장은 그 7~8할을 내지인이 점했던 사실에서 보 듯이, 면장=조선인, 읍장=내지인 이라는 분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V. 나오며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조선총독부 내부의 내지인·조선인 관료의 쌍방의 민족별 구 성을 각 계급별로 개관하고, 본부·지방청별로 職別 민족별 구성의 기본적 분석을 행하

21) 내지인 集住지역의 군·읍의 동향에 대해서는, 지수걸, <일제시기의 재조선(단위읍) 일본인사회와 조선의 “지방자치”-충청남도 공주·대전·조치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宮嶋博史·김용덕 편저, 2005 《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Ⅱ 日帝支配期-(日韓共同研究叢書12)》 (慶應義塾大學出版會)가 시사가 풍부하다.

22) 예를 들면, 松本武祝, 2005 《朝鮮農村の‘植民地近代’經驗》 (社會評論社) 참조.

였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1935년경을 사례로 하여 본부·지방청 각각의 階層圖를 작성한 것이 [자료22]이다. 1940년대의 명확한 수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 특히 지방청의 주임·판임관 부분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총독부 관료의 계층별 민족구성은 기본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그대로였다고 할 수 있다.

제국 일본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식민지 관청인 조선총독부는 엄밀한 계급 질서 속에서 방대한 관료군을 거느렸고 조선 전토의 구석구석에 펼쳐진 관료조직이 내지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관료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내부에는 민족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시하 조선인 관료의 수적 증대가 눈에 띄기는 하지만 내지인 관료도 증대했다는 점, 그리고 특히 본부·지방청의 상층부(고등관) 관료군의 증대 부분을 내지인이 차지하고 있었던 점, 내지인·조선인 관료간의 급여면 등에서의 민족 격차는 패전·해방 직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sup>23)</sup>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지인 관료와 조선인 관료는 대등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근무하는 하루하루 속에서 민족 격차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

23) 植民地在勤加俸制度는 조선인 징병제 실시를 목전에 둔 1944년에 부분적으로 개편되었고, 다시 1945년 4월 國政參政權 부여제도 창설과 동시에 ‘處遇改善’ 정책의 일환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단, 내지인에 대한 가봉지급을 철폐하는 것은 아니고 조선인 관료에게도 가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자료 1】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수 (국비지번직원)

(단위:명)

년	친임관 및 척임관· 동대우관			주임관· 동대우관			관임관· 동대우관			촉탁				고원			합계				
	내 지 인	조 선 인	합 계	내 지 인	조 선 인	합 계	내 지 인	조 선 인	합 계	내 지 인	조 선 인	외 국 인	합 계	내 지 인	조 선 인	합 계	내 지 인	조 선 인	외 국 인	합 계	
1910			74			1026			8261											-	14529
1911			78			1089			9602											-	17066
1912			86			1074			10739											-	21759
1913	44	39	83	700	305	1005	7708	4048	11756	162	24	-	186	5709	4651	10360	14323	9067	-	23390	
1914	43	41	84	685	305	990	7964	4210	12174	145	24	-	169	5883	5571	11454	14720	10151	-	24871	
1915	44	38	82	682	315	997	8053	4861	12914	171	28	-	199	6195	5548	11743	15143	10790	-	25933	
1916	44	37	81	697	318	1015	8240	3291	11531	369	34	-	403	6360	5987	12347	15710	9667	-	22377	
1917	42	38	80	636	262	898	7294	2480	9774	337	37	-	374	4300	4928	9228	12609	7745	-	20354	
1918	44	39	83	671	302	973	7331	2694	11025	177	32	-	209	4642	5370	10012	12865	8437	-	21302	
1919	44	36	80	725	316	1041	14344	9737	24081	178	40	1	219	4444	3369	7813	19735	13498	1	33234	
1920	43	44	87	741	312	1053	16495	10618	27113	220	41	1	262	4794	3142	7936	22293	14157	1	36450	
1921	63	35	98	859	344	1203	17500	11101	28601	241	50	4	295	5108	3993	9101	23771	15523	4	39298	
1922	51	35	86	956	355	1311	18439	11240	29679	309	85	4	398	5584	4749	10333	25339	16464	4	41807	
1923	53	35	88	970	353	1323	19145	10857	30002	324	71	5	400	6018	4816	10834	26510	16132	5	42647	
1924	41	35	76	892	333	1225	17613	9658	27271	286	72	7	365	5448	4587	10035	24280	14685	7	38972	
1925	48	37	85	817	329	1146	18394	9569	27963	227	63	5	295	7201	4773	11974	26687	14771	5	41463	
1926	59	39	98	905	327	1232	18266	9621	27887	273	112	* 10	385	7748	5194	12942	27251	15293	10	42544	
1927	62	38	100	960	331	1291	18767	9949	28716	294	126	* 14	420	8394	5531	13925	28477	15975	14	44452	
1928	62	37	99	1031	330	1361	19269	10118	29387	313	122	* 11	435	8884	5804	14688	29559	16411	11	45970	
1929	66	37	103	1058	302	1360	19730	10059	29789	360	135	* 13	495	9518	6179	15697	30732	16712	13	47444	
1930	66	37	103	1077	323	1400	20199	10018	30217	366	121	* 16	487	10053	6548	16601	31761	17047	16	48808	
1931	65	38	103	1047	323	1370	19417	10154	29571	* 424	162	*	586	10307	6962	17269	* 31260	17639	*	48899	
1932	68	32	100	1058	322	1380	20252	10912	31164	* 421	166	*	587	* 10677	7355	18032	* 32476	18787	*	51263	
1933	75	33	108	1085	322	1407	20089	10724	30813	415	188	-	603	10956	7657	18613	32620	18924	-	51544	
1934	80	35	115	1092	326	1418	20963	11051	32014	439	300	-	739	11594	7935	19529	34168	19647	-	53815	
1935	84	34	118	1118	329	1447	21712	11180	32892	489	324	-	813	12239	8456	20695	35642	20323	-	55965	
1936	88	35	123	1189	333	1522	22740	11747	34487	579	418	-	997	13486	8957	22443	38082	21490	-	59572	
1937	98	39	137	1350	349	1699	24177	12477	36654	597	478	-	1075	14967	10497	25464	41189	23840	-	65029	

16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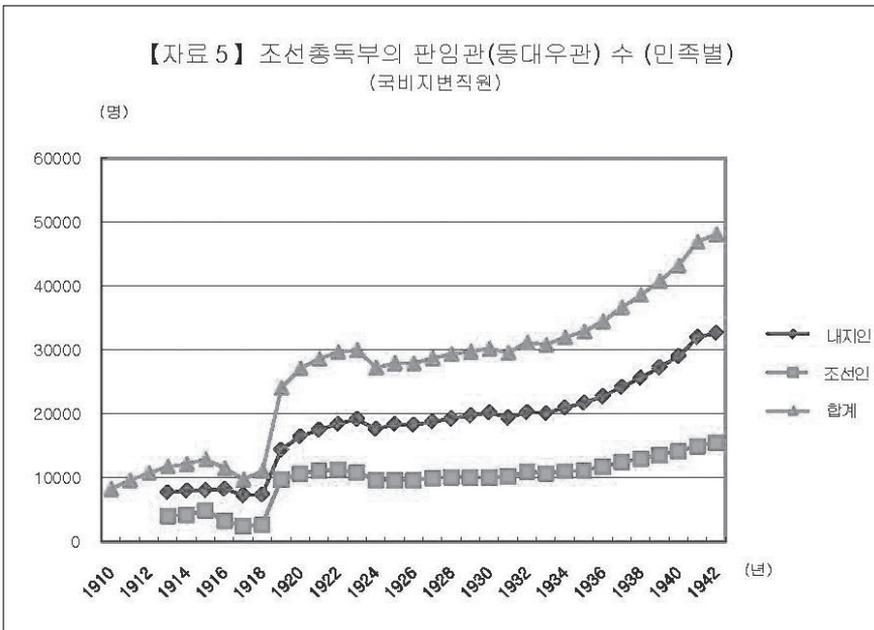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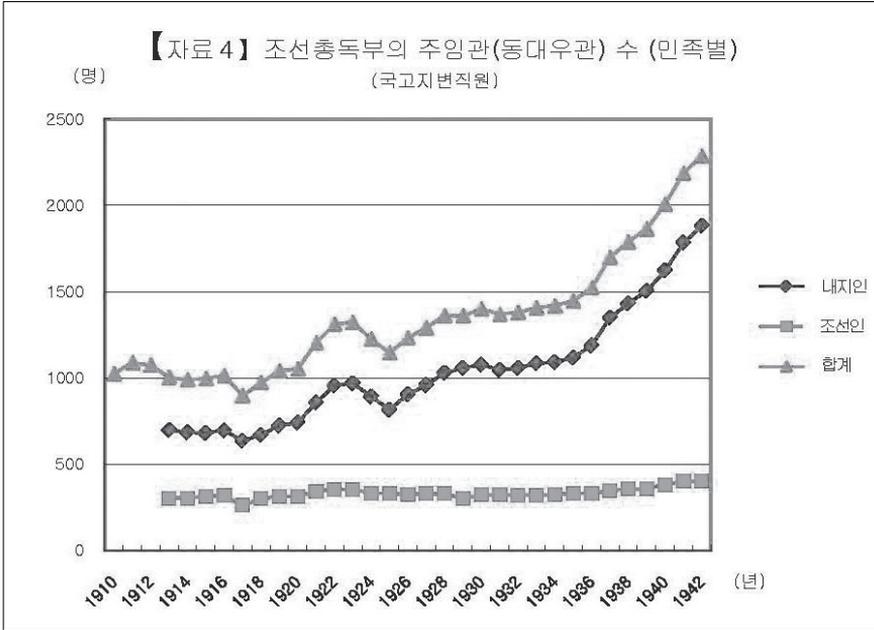
1938	103	34	137	1432	357	1789	25599	12987	38586	571	444	—	1015	15540	12142	27682	43245	25964	—	69209
1939	108	35	143	1505	359	1864	27269	13535	40804	521	630	12	1163	16775	15462	32237	46287	29912	12	76211
1940	113	33	146	1624	383	2007	28984	14224	43208	671	541	9	1221	18515	20821	39336	49907	36002	9	85918
1941	124	37	161	1784	403	2187	31982	14952	46934	851	763	10	1624	20474	26363	46837	55215	42518	10	97743
1942	129	38	167	1883	404	2287	32627	15479	48106	914	836	4	1754	21749	29162	50911	57302	45919	4	103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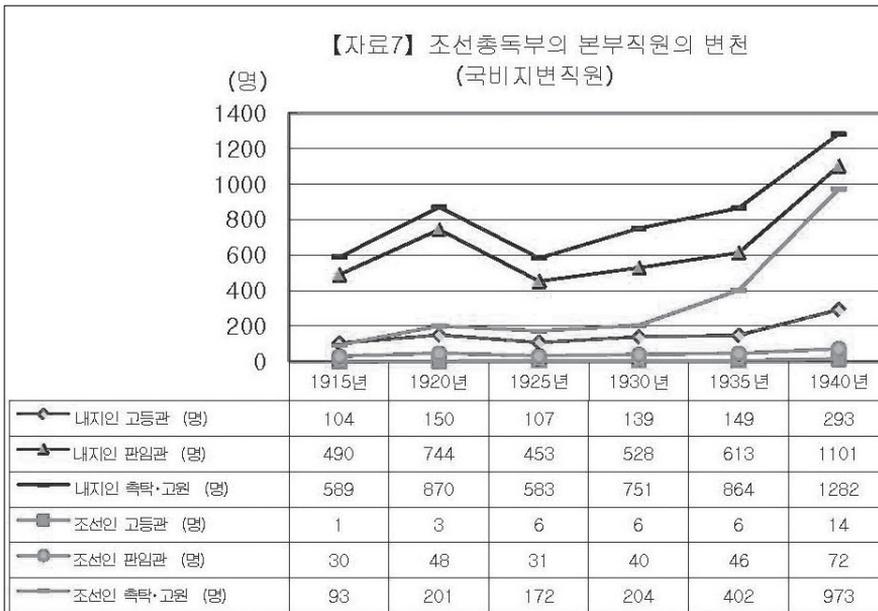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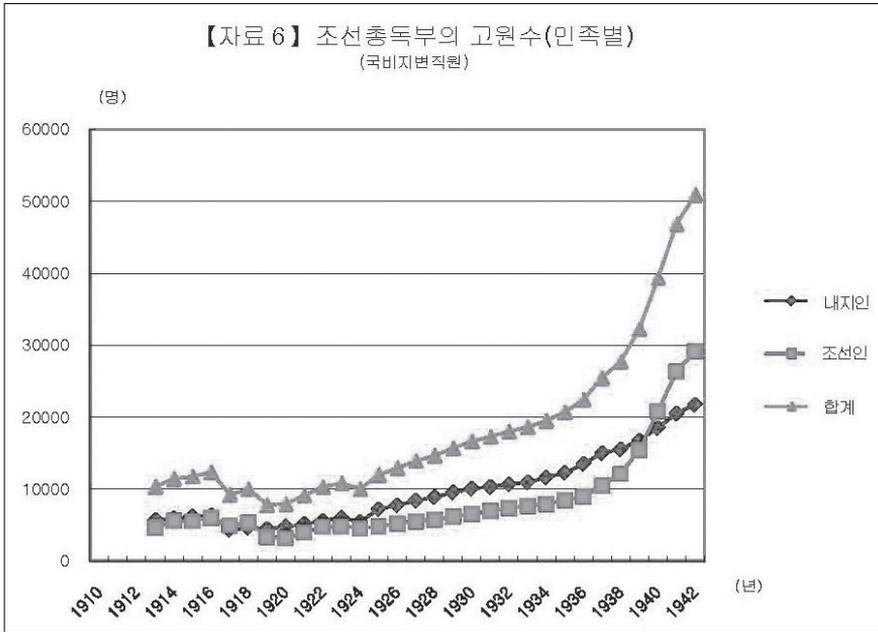
주 1 : 이 표는 岡本眞希子, 2008 《植民地官僚の政治史》(三元社) 60 <표 1~4>에서 체재를 수정하여 전재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년도판을 근거로 작성.

주 2 : 표 중의 「\*」 외국인에 관한 것. 1926~1930년의 촉탁 외국인수는 내지인, 조선인 어느 쪽인가 포함시켜 계산하고 있지만 분별이 불가능하여 再掲하였다. 또 1931~1932년의 고원 외국인은 내지인에 포함시켜 계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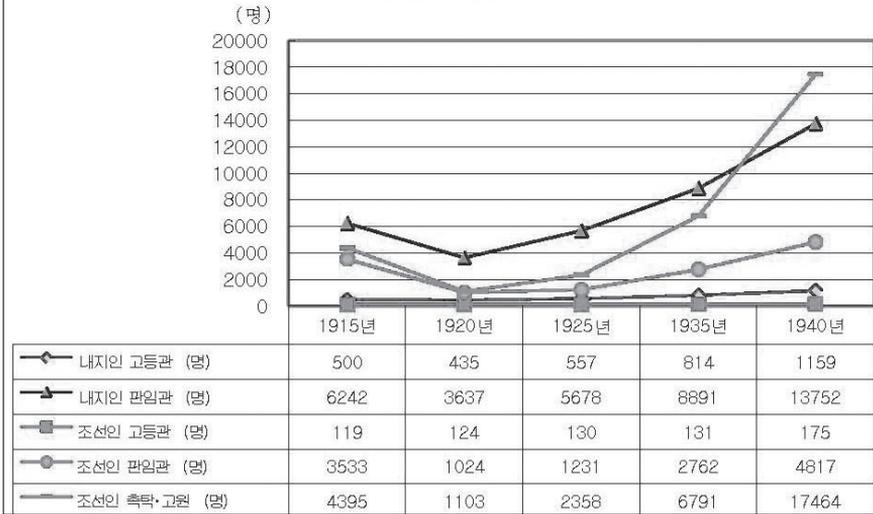


\*[자료 2~10]은 岡本眞希子, 2008 《植民地官僚の政治》(三元社)의 [그림 1~2] 61~63·68에서 체계를 수정하여 전재. 상기의 <표 1>과 같이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년도판을 근거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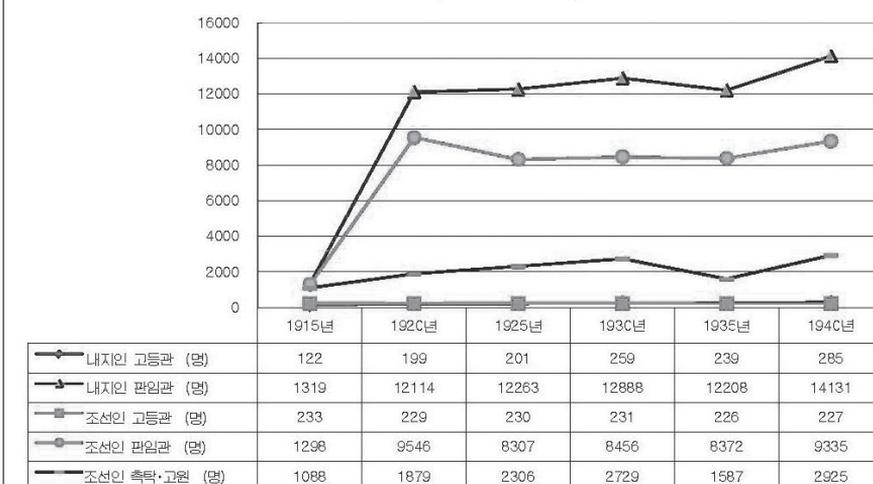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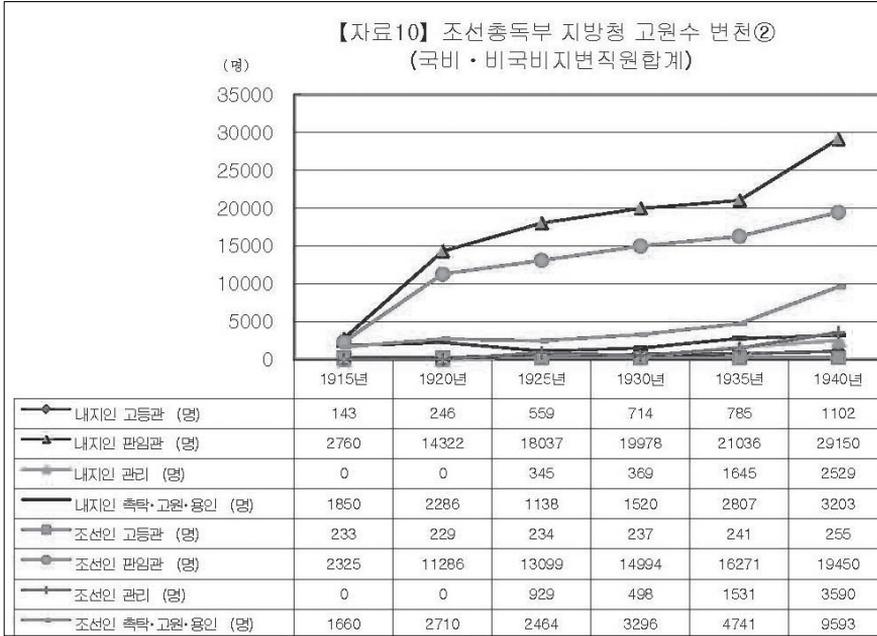


【자료 8】 조선총독부의 소속관서(지방청 제외) 고원수 변천  
(국비지번직원)



【자료 9】 조선총독부 지방청 고원수 변천①  
(국비지번직원)









	세관정(3-5등), 부윤(경성·대구·부산·평양부윤)(3-5등), 진주(경성·서대문·평양·대구·경북정)(3-5등), 동경	1=4,500 2=4,100 3=3,800 4=3,400 5=3,100					1=4,500 2=4,100 3=3,800 4=3,400 5=3,100	세관(3-5등), 동경	1=4,500 2=4,100 3=3,800 4=3,400 5=3,100	
기		1=3,800 2=3,400 3=3,100 4=2,800 5=2,600 6=2,400 7=2,200 8=2,000 9=1,800 10=1,600	국립화원정(3-7등)	진옥(小宮·市谷·豊彦學·栗野·大原·吉田屋·廣島·黒崎·宮城·札幌) 왕무수장, (3-5등)	1=4,500 2=4,100 3=3,800 4=3,400 5=3,100	동경(3-5등), 동경 동아리(3-6등)	1=3,800 2=3,400 3=3,100 4=2,800 5=2,600 6=2,400 7=2,200 8=2,000 9=1,800 10=1,600	동경(3-5등), 동경	1=3,800 2=3,400 3=3,100 4=2,800 5=2,600 6=2,400 7=2,200 8=2,000 9=1,800 10=1,600	
타	경성(3-5등), 부산(3-5등), 대구(3-5등), 도항무의관(5-8등), 도수(3-5등), 의관(3-5등)	1=3,100 2=2,800 3=2,600 4=2,400 5=2,200 6=2,000 7=1,800 8=1,600 9=1,400 10=1,300 11=1,200 12=1,100					1=3,100 2=2,800 3=2,600 4=2,400 5=2,200 6=2,000 7=1,800 8=1,600 9=1,400 10=1,300 11=1,200 12=1,100	제국(3-5등), 관립(3-5등), 고등(3-5등), 사범(3-5등), 영(3-5등)	1=3,100 2=2,800 3=2,600 4=2,400 5=2,200 6=2,000 7=1,800 8=1,600 9=1,400 10=1,300 11=1,200 12=1,100	

주1 이 표는 『滿鮮留學等關係書』(1930년 1월 1일 현재, 1-15) 및 『關本』(1930년 1월 17-177쪽)에서 본국 및 조선총독부 부문을 부분 기재함, 본국 관청에 관해서는 적절히 추출하였다.  
주2 관직명 옆의 ( ) 는, 고등관의 관등을 표시한다예: 「내각서기관장(1·2등)」은 내각서기관장의 관등이 1등관 또는 2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표시, 연봉 표기는 1급봉에 6,500원을 지급받는 경우  
주3 각 식민지관청과 본국 제관청에 설치된 각종의 기사는 최임관 또는 주임관(2-7등)으로 그 연봉은 최임관 = 1급 6,000원·2급 5,500원·3급 5,200원·4급 4,800원·5급 4,500원·6급 4,100원·7급 3,800원·8급 3,400원·9급 3,100원·10급 2,800원·11급 2,400원·12급 2,000원.  
주4 부형 지사의 연봉 중, 東洋府·奉天府·大原府·奉天府知事·兵備廳 지사에게는 800원, 長崎·新潟·愛知·宮城·広島·福岡·熊本縣 知事에게는 600원의 지정지 기봉을 가산할 수 있었다. 단 지정지 기봉과 본봉의 합계가 6,500원을 넘는 경우의 지정지 기봉은 6,500원에서 본봉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었다(『朝鮮官制』, 1920년 4월 2권).  
주5 조선총독부 제직교라고 하는 것은, 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의학전문학교·수원고등공업학교·경성고등농림학교·경성고등상업학교·대구사범학교·대구사범학교·평양사범학교·경성공업학교를 가리킨다.





【자료 14】 조선 총독부 수뇌부 인사일람②

내각	조선총독	정무총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식산국장	[본부 6 국(1919.8.20)]			소속관세(주요)		(총독관방(주요부위))
						내무국장	재무국장	식산국장	법무국장	경무국장	
周敏 (1919.9.29)	齋藤實 1919.8.13	水野海太郎 1919.8.12	赤池清 1919.8.20	河内山樂三 1919.8.20	西村保吉 1919.8.20	藤分三芳 1919.8.20	藤田善三郎 1919.8.20	野口清吉 1919.8.20	河内山樂三 1921.4.1	和田一郎 1919.8.20	
高橋是清 1921.11.13			大塚榮三郎 1919.9.20			横田五郎 1919.12.25		赤池清 1919.9.20	吉田若治郎 1920.6.1	吉田若治郎 1921.10.24	吉田浩 1932.10.4
加藤友三郎 1922.6.12		有吉忠一 1922.6.15		和田一郎 1922.7.3		松寺竹雄 1923.4.5	長野幹 1922.10.16	丸山鶴吉 1922.6.17			
山本權兵衛 1923.9.2											
清浦奎吾 1924.1.7											
加藤高明 1924.6.11		下岡忠治 1924.7.4		重間秀雄 1924.8.13	池田泰雄 1924.12.1		●李彰禧 1924.12.12	三矢宮松 1924.9.13		山口隆三 1925.8.11	
若槻禮次郎 1926.1.30		湯淺倉平 1925.12.3						淺利三朗 1926.9.28			
田中義一 1927.4.20	宇垣一成 代理총독 (1927.4.15 ~ 10.1)										
	[齋藤 복귀]										
	山梨半造 (1927.12.10)	池上四郎 1927.12.23			今村武志 (1928.3.29)		松浦謙次郎 1929.2.1			山本厚藏 1928.1.31	松木敏 1928.1.31
		[1929.4.4~次更]									
		兒玉秀雄 (1929.6.22)									
浜口雄幸 1929.7.2	齋藤實 1929.8.17		今村武志 1929.11.8	林繁藏 1929.11.8	松村松盛 1929.11.8	深澤新一郎 1929.10.30	武部敬一 1929.10.9	森岡二郎 1929.11.8			
若槻禮次郎 1931.4.14	宇垣一成 (1931.6.17)	今井田清徳 (1931.6.19)	牛島春三 1931.7.22		中村重之助 1931.7.22	牛島春三 1931.6.27	林茂樹 1931.9.23	池田清 1931.6.26			
					渡邊忍 (1931.9.23)					土師盛眞 1931.9.23	
大塚敬 1931.12.13						笠井健太郎 1932.1.30					
齋藤實 1932.5.26											
【본부 7 국(1932.7.27)】											
			내무국장	재무국장	식산국장	법무국장	학무국장	경무국장	농림국장		
			내무국장 (什島, 계속)	재무국장 林繁藏, 계속	식산국장 榑積寛次郎 (1932.7.27)	법무국장 笠井, 계속	학무국장 林茂樹, 계속	경무국장 池田, 계속	농림국장 渡邊忍 (1932.7.27)		
										井上清	松田正之



【자료 15】 본부의 부·국·과장의 민족별 입람표(1920~1940)

	1920 (7/1)	1921 (7/1)	1922 (7/1)	1923 (7/1)	1924 (7/1)	1925 (7/1)	1926 (7/1)	1927 (7/1)	1928 (7/1)	1929 (8/1)	1930 (7/1)	1931 (7/1)	1932 (7/1)	1933 (7/1)	1934 (8/1)	1935 (7/1)	1936 (7/1)	1937 (7/1)	1938 (7/1)	1939 (7/1)	1940 (2/1)
조선총독	•	•	•	•	•	•	•	•	•	•	•	•	•	•	•	•	•	•	•	•	•
정무총감	•	•	•	•	•	•	•	•	•	•	•	•	•	•	•	•	•	•	•	•	•
비서과장	•	•	•	•	•	•	•	•	•	•	•	•	•	•	•	•	•	•	•	•	•
외사과장	•	•	•	•	•	•	•	•	•	•	•	•	•	•	•	•	•	•	•	•	•
외무부장	-	-	-	-	-	-	-	-	-	-	-	-	-	-	-	-	-	-	-	-	-
총무과장	-	-	-	-	-	-	-	-	-	-	-	-	-	-	-	-	-	-	-	-	-
임시국세조사과장	-	-	-	-	-	-	-	-	•	•	•	•	•	•	•	•	•	•	•	•	•
국세조사과장	-	-	-	-	-	-	-	-	-	-	-	-	-	-	-	-	-	-	-	-	-
인사과장	-	-	-	-	-	-	-	-	-	-	-	-	-	-	-	-	-	-	-	-	-
재정과장	-	-	-	-	-	-	-	-	-	-	-	-	-	-	-	-	-	-	-	-	-
서무과장	•	•	(차)	•	•	•	•	•	•	•	•	•	•	•	•	•	•	•	•	•	•
문서과장	•	•	•	•	•	•	•	•	•	•	•	•	•	•	•	•	•	•	•	•	•
회계과장	•	•	•	•	•	•	•	•	•	•	•	•	•	•	•	•	•	•	•	•	•
통계과장	•	•	•	-	-	-	-	-	-	-	-	-	-	-	-	-	-	-	-	-	-
조사과장	-	-	-	•	•	•	•	•	•	•	•	•	•	•	•	•	•	•	•	•	•
토목부장	•	•	•	•	•	•	•	•	•	•	•	•	•	•	•	•	•	•	•	•	•
토목과장	•	•	•	•	•	•	•	•	•	•	•	•	•	•	•	•	•	•	•	•	•
영선과장	•	-	-	-	-	-	-	-	-	-	-	-	-	-	-	-	-	-	-	-	-
공사과장	-	•	•	•	•	•	•	•	•	•	•	•	•	•	•	•	•	•	•	•	•
건축과장	-	•	•	•	•	•	•	•	•	•	•	•	•	•	•	•	•	•	•	•	•
철도부장	•	•	•	•	•	•	•	•	•	•	•	•	•	•	•	•	•	•	•	•	•
철도과장	•	•	•	•	•	•	•	•	•	•	•	•	•	•	•	•	•	•	•	•	•
공무과장	•	•	•	•	•	•	•	•	•	•	•	•	•	•	•	•	•	•	•	•	•
내무부장	•	•	•	•	•	•	•	•	•	•	•	•	•	•	•	•	•	•	•	•	•
제일과장	•	•	-	-	-	-	-	-	-	-	-	-	-	-	-	-	-	-	-	-	-
제2과장	•	•	-	-	-	-	-	-	-	-	-	-	-	-	-	-	-	-	-	-	-
제3과장	-	-	•	•	•	•	•	•	•	•	•	•	•	•	•	•	•	•	•	•	•
사법과장	-	-	•	•	•	•	•	•	•	•	•	•	•	•	•	•	•	•	•	•	•

세무과장

내무부







【자료 16】 지방제도 변천표

	도	부	군	읍	면
1910 년대	도장관	부윤 — 부협의회 (지문기관) (도장관 임명제) 【1913년 공포·1914년 시행】 (부협의회 = 1913년 제령 제7호 '부제')			면장
	【1910년 공포·시행】			【1917년 공포·시행】	면장
1920 년대	도지사 — 도평의회 (지문기관) (도지사 임명제)	부윤 — 부협의회 (지문기관) (선거제)		면장 — 면협의회 (지문기관) (선거제) (군수·도회의 임명제)	면장 — 면협의회 (지문기관) (선거제) (군수·도회의 임명제)
	【1920년 공포·시행】 (도평의회 = 1920년 제령 제15호 '朝鮮道地方費令') 도지사 — 도회 (의결기관) (2/3은 간접선거제·1/3은 도지사 임명제)	【1920년 공포·시행】 (부협의회 = 1920년 제령 제12호 '府制中改正') 부윤 — 부회 (의결기관) (선거제)		【1920년 공포·시행】 (면협의회 = 1920년 제령 제13호 '面制中改正')	읍 — 읍장 — 읍회 (의결기관) (선거제)
1930 · 40 년대	【1930년 공포·년 시행】 (도회 = 1930년 제령 제15호 '道制')	【1930년 공포·년 시행】 (부회 = 1930년 제령 제11호 '府制')	【1910년 공포·시행】	【1915년 공포·시행】	(읍·면협의회 = 1930년 제령 제12호 '面制')

(작성 : 오카모토)

【자료17】 조선총독부 지방청장 인사 일람

내각	조선총독	【13도(1910.9.30)】												
		경기도청관	경상남도청관	경상북도청관	충청남도청관	충청북도청관	함경남도청관	함경북도청관	황해도청관	전라남도 청관	전라북도청관	강원도청관	평안남도청관	평안북도청관
桂太郎 (1908.7.14)	寺内正毅 (1910.10.1)	檜垣重右 (1910.10.1)	香川輝 (1910.10.1)	●李鎔鎬 (1910.10.1)	●朴重陽 (1910.10.1)	鈴木隆 (1910.10.1)	●申應熙 (1910.10.1)	武井友貞 (1910.10.1)	●趙義聞 (1910.10.1)	能勢辰五郎 (1910.10.1)	●李斗璜 (1910.10.1)	●李圭完 (1910.10.1)	松永武吉 (1910.10.1)	川上常郎 (1910.10.1)
西園寺公望 (1911.8.30)														
桂太郎 (1912.12.21)			佐々木藤太郎 (1913.2.14)											
山本權兵衛 (1913.2.20)														
大隈重信 (1914.4.16)														
寺内正毅 (1916.10.9)		松永武吉 (1916.3.28)		鈴木隆 (1916.3.28)	小原新三 (1915.3.31)	●柳赫魯 (1916.3.28)	●李圭完 (1918.9.23)	上林敬次郎 (1916.10.28)	●張藝植 (1917.6.13)	宮木又七 (1916.3.28)	●李珍鎬 (1916.3.28)	工藤英一 (1916.3.28)		藤川利三郎 (1916.11.14)
原敬 (1918.9.29)														
	藤藤實 (1919.8.13)	工藤英一 (1919.9.26)	藤川利三郎 (1919.9.26)	경상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함경남도지사	함경북도지사	황해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강원도지사	평안남도지사	평안북도지사
				時實秋穗 (1919.9.26)	米田基本郎 (1921.2.12)	齋藤禮三 (1921.8.5)	●李圭完 (1918.9.23)	齋藤禮三 (1921.8.5)	●朴重陽 (1921.2.12)	支角仲藏 (1919.9.26)	支角仲藏 (1921.8.5)	●申錫麟 (1921.8.5)	藤田治策 (1919.9.26)	飯尾藤次郎 (1919.9.26)
高橋是清 (1921.11.13)			澤田龜丈 (1921.12.26)	●金貞鉉 (1921.2.12)										
加藤友三郎 (1922.6.12)		時實秋穗 (1923.2.24)	和田純 (1923.2.24)	澤田龜丈 (1923.2.24)		●朴重陽 (1923.2.24)		中野太三郎 (1923.2.24)	飯尾藤次郎 (1923.2.24)			●尹申炳 (1923.2.26)	米田基本郎 (1923.2.24)	生田清三郎 (1923.2.24)
山本權兵衛 (1923.9.2)														
清浦奎吾 (1924.1.7)														
加藤高明 (1924.6.11)				●石鎬衡 (1924.12.1)		●金貞鉉 (1924.12.1)			矢錫永三郎 (1924.12.1)			●朴榮喆 (1924.12.1)		谷多喜庵 (1925.6.15)

若柳隆次郎 (1926.1.30)	米田甚太郎 1926.3.8)	須藤素 (1926.5.12)	●俞星濤 (1926.8.14)	●韓圭復 (1926.8.14)	中野太三郎 (1926.8.14)	●朴榮喆 (1926.8.14)	●石鎮銜 (1926.8.14)	渡邊忍 (1926.3.8)	●朴相駿 (1926.8.14)	青木戒三 (1926.3.8)
田中義一 (1927.4.20)			●申錫麟 (1927.5.18)			●朴相駿 (1927.5.18)			●俞星濤 (1927.5.18)	
(齋藤, 昌子)										
山梨半造 (1927.12.10)	渡邊忍 (1929.1.21)	水口隆三 (1928.1.31) 須藤潔 (1929.1.21)		安達房治郎 (1928.3.30)	馬野精一 (1929.1.21)	●林相駿 (1928.3.29)	●金瑞圭 (1929.1.19)	林茂樹 (1929.1.21)		園田寛 (1929.1.21)
齋藤實 (1929.8.17)	須藤素 (1929.1.21)	谷多雪磨 (1929.11.28) 渡邊豊日子 (1930.12.24)	●劉錫淳 (1929.11.28)	●洪承均 (1929.11.28)	松井房治郎 (1929.12.11) 關水武 (1930.11.12)	●韓圭復 (1929.11.28)	馬野精一 (1929.12.11)	●金瑞圭 (1929.12.11)	●李範益 (1929.11.28)	石川登盛 (1929.11.28)
若柳隆次郎 (1931.4.14)	松本誠 (1931.9.23)	●金瑞圭 (1931.9.23)	岡崎哲郎 (1931.9.23)	●南宣營 (1931.9.23)			安藤翠葉一 (1931.9.23) 雷永文一 (1931.10.7)	矢島杉造 (1931.9.23)		藤原喜藏 (1931.9.23)
大養毅 (1931.12.13)										
齋藤實 (1932.5.26)		關水武 (1933.8.4)			萩原彦三 (1933.8.4)	●鄭喬源 (1933.4.7)			●高元熙 (1932.9.27)	土師盛貞 (1932.12.13)
岡田啓介 (1934.7.8)	雷永文一 (1934.11.5)	岡崎哲郎 (1935.4.1)	●李範益 (1935.4.1)	●金東熙 (1935.4.1)	湯村辰二郎 (1935.2.4)	近藤常尚 (1935.2.20)	竹内健郎 (1934.11.5)	孫永穆 (1935.4.1)	●孫永穆 (1935.4.1)	安武直夫 (1935.4.1)
廣田弘毅 (1936.3.9)	安井誠一郎 (1936.5.21)	伊達四雄 (1936.5.21)					兒島高信 (1936.7.30)	●金時權 (1936.5.21)	●金時權 (1936.5.21)	上内彦策 (1936.5.21)
林統十郎 (1937.2.2)	湯村辰二郎 (1936.10.16)	上瀧基 (1936.9.5)			笹川恭三郎 (1936.10.16)					
近衛文磨 (1937.6.4)	阿部千一 (1937.5.26)	山澤和二郎 (1938.9.10)	●鄭喬源 (1937.2.20)			●姜弼成 (1937.2.20)		孫永穆 (1937.4.1)	●金時權 (1937.4.1)	石田千太郎 (1938.8.18)
平沼驥一郎 (1939.1.5)	甘藪義邦 (1937.7.3)		●李聖根 (1939.5.17) (金川聖)	●俞善養 (1939.4.26)				新貝肇 (1937.7.3)	●尹泰彬 (1939.5.17) (伊藤泰彬)	西本計三 (1939.3.15)
阿部信行 (1939.8.30)						●金東泰 (1939.12.28) (金村康男)				
米内光政	鈴木壽男					大野謙一				

(1940.1.16) 近衛文麿 (1940.7.22)			高橋敏 (1941.1.24)	●李基枋 (1941.5.31) (松村基弘)	●尹泰彬 (1940.9.2) (伊藤泰彬)	新貝肇 (1940.9.2) 丹下郁太郎 1941.5.31)	(1940.9.9)	●藤昌璧 (1940.9.2) (武永憲樹)	●李源甫 (1940.9.2) (李家源甫)	高尾甚造 (1940.9.2)			高安彦 (1940.9.2)
近衛文麿 (1941.7.18)			高尾甚造 (1941.11.19)			瀬戸湊一 (1942.4.7)		●宋文憲 (1942.1.24) (山本文憲)	●金秉泰 (1942.1.24) (金村泰男)	柳生繁雄 (1941.11.19)			高安彦 (1941.11.19)
車修吾機 (1941.10.18)		西岡芳次郎 1941.11.19)	高尾甚造 (1941.11.19)			瀬戸湊一 (1942.4.7)		●宋文憲 (1942.1.24) (山本文憲)	●金秉泰 (1942.1.24) (金村泰男)	柳生繁雄 (1941.11.19)			高安彦 (1941.11.19)
		高安彦 (1942.5.29)	高安彦 (1942.6.2)	●藤昌璧 (1943.9.30) (武永憲樹)	●李昌根 (1942.10.23) (平松昌根)	柳生繁雄 (1943.12.1)	古川兼秀 (1942.10.23)	碓井忠平 (1942.10.23)		●劉鴻洵 (1943.12.1) (中原鴻洵)			下飯坂元 (1942.6.2)
小磯國昭 (1942.5.29)		瀬戸湊一 (1943.12.1)	高安彦 (1942.6.2)	●宋文憲 (1942.10.23) (山本文憲)	●李昌根 (1942.10.23) (平松昌根)	柳生繁雄 (1943.12.1)	古川兼秀 (1942.10.23)	碓井忠平 (1942.10.23)		●金大羽 (1943.8.18)			下飯坂元 (1942.6.2)
小磯國昭 (1944.7.22)		阿部信行 (1944.7.24)		●李昌根 (1944.8.17) (平松昌根)	●朴在弘 (1944.8.17) (増永弘)	岸勇一 (1945.2.14)		美根五郎 (1944.8.17) 八木信雄 (1944.12.21)					井坂圭一郎 1944.9.20)
鈴木貫太郎 1945.4.7)		生田青三郎 (1945.6.16)		●金大羽 (1945.6.16)	●鄭德源 (1945.6.16) (烏川德源)		渡邊靜郎 (1945.6.16)	高井竹雄 (1945.5.2)	●鄭然基 (1945.6.16) (草木然基)	●孫永穆 (1945.6.16)			古川兼秀 (1945.6.16)
東久邇宮稔彦 (1945.8.17)		(~1945.9.28)											

주 1. 이 표는 岡本眞希子, 2008 《権民地官條の政治史》(三元刷の【豆8-3】674-583쪽)에서 재지를 수정하여 전자한 것임. 출처 : 전기 《戦前期日本官條制の制度・組織・人事》>로부터 작성.

주 2. 지방 제도의 변천은 《朝鮮 總督府地方官制(1910년 칙령 제357호), 《朝鮮 總督府地方官制(1919년 칙령 제391호)에 의한

주 3. 이름 옆의 [●]는 조선인 재직자를 표시. [ ] 안의 이름은 '창씨개명' 후의 씨명으로 1940년 이후의 재직자에 한하여 기재하였다.



년(월 일)	지사	내무부										재무부					산업부					경찰부						
		내무부장관	내무과장	지방과장	학무과장	토목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신림과장	만용과장	산업과장	재무과장	세과장	이재과장	산업부장관	산업과장	만용과장	신림과장	토지개발과장	원흥지검장	정경과장	정경과장	우경과장	근흥정경과장	보안과장	경찰과장	경찰과장	경찰과장
1931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2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3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4년(8월1일)	●	○	●	●	●	내무부(*재무부 폐지)										(이 기간에 산업부 미 설치)					경찰부							
1935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6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7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8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9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월일)	지사	내무부										재무부					산업부					경찰부						
		내무부장관	내무과장	지방과장	학무과장	토목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신림과장	만용과장	산업과장	재무과장	세과장	이재과장	산업부장관	산업과장	만용과장	신림과장	토지개발과장	원흥지검장	정경과장	정경과장	우경과장	근흥정경과장	보안과장	경찰과장	경찰과장	경찰과장
1931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2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3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4년(8월1일)	○	●	●	●	●	내무부(*재무부 폐지)										(이 기간에 산업부 미 설치)					경찰부							
1935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6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7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8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9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월일)	내무부										재무부				산업부						경찰부								
	내무 부장	내무 과장	지방 과장	지방 과장	학무 과장	학무 과장	토목 과장	토목 과장	회계 과장	회계 과장	사회 과장	내무부(*재무부 폐지)	재무 부장	재무 과장	이재 과장	산업 부장	산업 과장	산업 과장	마포 과장	신림 과장	수산 과장	고령 과장							
1931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2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3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4년(8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5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6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7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8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9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월일)	지사	내무부										재무부				산업부						경찰부							
1931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2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3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4년(8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5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6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7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8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9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 라 노 노

경 상 북 노



년(월일)	내무부										재무부					산업부					경찰부							
	내무	지방	지방	항목	투표	회계	사회	신림	만용	산업	재무	세무	이재	산업	산업	만용	신림	토지	토지	토지	경찰	경찰	경찰	경찰	경찰	경찰	경찰	경찰
1931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2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3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4년(8월1일)	●	내무부(*재무부 폐지)										내무부(*재무부 폐지)					경찰부											
1935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6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7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8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9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월일)	내무부										재무부					산업부					경찰부							
	내무	지방	지방	항목	투표	회계	사회	신림	만용	산업	재무	이재	산업	산업	만용	신림	토지	토지	토지	토지	경찰	경찰	경찰	경찰	경찰	경찰	경찰	경찰
1931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2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3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4년(8월1일)	●	내무부(*재무부 폐지)										내무부(*재무부 폐지)					경찰부											
1935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6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7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8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9년(7월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안북도

평안북도





【자료19】 도청의 지사·부장·과장의 민족별 수·비율 (1931~1939년)

	지사			부장			과장		
	내지인	조선인	합계	내지인	조선인	합계	내지인	조선인	합계
1931년(7월1일)	8 (61.5%)	5 (38.5%)	5 (38.5%)	37 (86.0%)	6 (14.0%)	43 (100%)	100 (88.5%)	13 (11.5%)	113 (100%)
1932년(9월1일)	8 (61.5%)	5 (38.5%)	13 (100%)	37 (86.0%)	6 (14.0%)	43 (100%)	103 (90.4%)	11 (9.6%)	114 (100%)
1933년(7월1일)	8 (61.5%)	5 (38.5%)	13 (100%)	37 (86.0%)	6 (14.0%)	43 (100%)	112 (89.6%)	13 (10.4%)	125 (100%)
1934년(8월1일)	8 (61.5%)	5 (38.5%)	13 (100%)	25 (83.3%)	5 (16.7%)	30 (100%)	120 (90.2%)	13 (9.8%)	133 (100%)
1935년(7월1일)	8 (61.5%)	5 (38.5%)	13 (100%)	26 (86.7%)	4 (13.3%)	30 (100%)	120 (90.9%)	12 (9.1%)	132 (100%)
1936년(7월1일)	8 (61.5%)	5 (38.5%)	13 (100%)	25 (83.3%)	5 (16.7%)	30 (100%)	127 (91.4%)	12 (8.6%)	139 (100%)
1937년(7월1일)	8 (61.5%)	5 (38.5%)	13 (100%)	25 (83.3%)	5 (16.7%)	30 (100%)	139 (91.4%)	13 (8.6%)	152 (100%)
1938년(7월1일)	8 (61.5%)	5 (38.5%)	13 (100%)	34 (87.2%)	5 (12.8%)	39 (100%)	141 (91.6%)	13 (8.4%)	154 (100%)
1939년(7월1일)	8 (61.5%)	5 (38.5%)	13 (100%)	33 (84.6%)	6 (15.4%)	39 (100%)	160 (93.0%)	12 (7.0%)	172 (100%)

출전 : 1997 <<舊植民地人事總覽(조선편)>> (일본도서센터)에 의거 작성한 【표 18】에서 산출

【자료 20】 1940년대의 칙·주·판임관의 민족별(1941~1943년)

		1941년			1942년			1943년		
		내지인	조선인	합계	내지인	조선인	합계	내지인	조선인	합계
본부	칙임관	20 (100%)	0 (0%)	20 (100%)	18 (100%)	0 (0%)	18 (100%)	18 (100%)	0 (0%)	18 (100%)
	주임관	328 (96.2%)	13 (3.8%)	341 (100%)	340 (95.8%)	15 (4.2%)	355 (100%)	281 (94.3%)	17 (5.7%)	298 (100%)
	판임관	1,359 (93.5%)	94 (6.5%)	1,453 (100%)	1,356 (92.6%)	108 (7.4%)	1,464 (100%)	887 (92.0%)	77 (8.0%)	964 (100%)
채신국	칙임관	2 (100%)	0 (0%)	2 (100%)	2 (100%)	0 (0%)	2 (100%)	2 (100%)	0 (0%)	2 (100%)
	주임관 및 동대우관	110 (97.3%)	3 (2.7%)	113 (100%)	99 (93.4%)	7 (6.6%)	106 (100%)	73 (92.4%)	6 (7.6%)	79 (100%)
	판임관 급동대우관	3,564 (90.3%)	381 (9.7%)	3,945 (100%)	4,501 (84.8%)	808 (15.2%)	5,309 (100%)	4,110 (64.1%)	2,303 (35.9%)	6,413 (100%)
교통국 철도국	칙임관	7 (100%)	0 (0%)	7 (100%)	6 (100%)	0 (0%)	6 (100%)	9 (90%)	1 (10%)	10 (100%)
	주임관 및 동대우관	215 (98.6%)	3 (1.4%)	218 (100%)	217 (98.6%)	3 (1.4%)	220 (100%)	273 (97.8%)	6 (2.2%)	279 (100%)
	판임관 및 동대우관	4,836 (90.2%)	523 (9.8%)	5,359 (100%)	4,747 (89.3%)	570 (10.7%)	5,317 (100%)	5,995 (89.5%)	700 (10.5%)	6,695 (100%)
전매국	칙임관	1 (100%)	0 (0%)	1 (100%)	2 (100%)	0 (0%)	2 (100%)	0 (0%)	0 (0%)	0 (0%)
	주임관 및 동대우관	55 (94.8%)	3 (5.2%)	58 (100%)	50 (94.3%)	3 (5.7%)	53 (100%)	30 (90.9%)	3 (9.1%)	33 (100%)
	판임관 및 동대우관	923 (71.8%)	363 (28.2%)	1,286 (100%)	867 (70.7%)	359 (29.3%)	1,226 (100%)	695 (73.2%)	254 (26.8%)	949 (100%)
道府郡島	칙임관	9 (64.3%)	5 (35.7%)	14 (100%)	10 (55.6%)	8 (44.4%)	18 (100%)	10 (62.5%)	6 (37.5%)	16 (100%)
	주임관 및 동대우관	213 (49.2%)	220 (50.8%)	433 (100%)	554 (59.6%)	376 (40.4%)	930 (100%)	591 (68.6%)	270 (31.4%)	861 (100%)
	판임관 및 동대우관	15,792 (61.6%)	9,846 (38.4%)	25,638 (100%)	18,126 (57.3%)	13,485 (42.7%)	31,611 (100%)	15,771 (54.2%)	13,315 (45.8%)	29,086 (100%)

출전 : 《最近三箇年ニ於ケル朝鮮總督府及洞所屬官署職員數比較對照表》水野直樹 편, 1998 <戰時期植民地統治資料> 4, (일본도서센터) 246~248에 의거 작성

【자료21】 각군의 군수·면장·읍장의 민족별 일람 (1920~1939년)

(○표는 조선인, 옆의 숫자는 사람 수) (● 표는 내지인, 옆의 숫자는 사람 수)

도	군	직명	1920년 (7월1일)	1925년 (7월1일)	1930년 (7월1일)	1935년 (7월1일)	1939년 (7/20)	내지인읍·면장및 조선인 읍장 재직면
경 기 도	고양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2	○12	○9	
	광주군	군수	○	○	○	○	○	
		면장	○16	○16	○16	○16	○16	
	양주군	군수	○	○	○	○	○	
		면장	○16	○16	○16	○16	○16	
	연천군	군수	○	○	○	○	○	
		면장	○12	○13	○13	○12	○12	
	포천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2	○12	○12	
	가평군	군수	○	○	○	○	○	
		면장	○6	○6	○6	○6	○6	
	양평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2	○12	○12	
	여주군	군수	○	○	○	○	○	
		면장	○10	○10	○10	○10	○10	
	이천군	군수	○	○	○	○	○	
		면장	○11	○11	○11	○11	○10	
		읍장	(未)	(未)	(未)	(未)	○1	○이천읍
	용인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2	○12	○12	
	안성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2	○12	○11	
		읍장	(未)	(未)	(未)	(未)	○1	○안성읍
	진위군	군수	○	○	○	○	(未)	
		면장	○11	○11	○11	○10		
	평택군	군수					●	
		면장	(未)	(未)	(未)	(未)	○9	
		읍장					●1	●평택읍
	수원군	군수	●	●	●	●	○	
		면장	○20 ●1	○20 ●1	○20 ●1	○20	○19	
		읍장	(未)	(未)	(未)	●1	●1	●모두 수원면·읍
시흥군	군수	○	●	●	●	●		
	면장	○9 ●1	○9 ●1	○9	○9	○8		
	읍장	(未)	(未)	(未)	●1	(未)	●모두 영등포면·읍	
부천군	군수	○	○	○	○	○		
	면장	○15	○15	○15	○15	○14		
금포군	군수	○	○	○	○	○		
	면장	○8	○9	○9	○9	○9		
강화군	군수	○	○	○	○	○		
	면장	○14	○14	○14	○13	○13		
피주군	군수	○	○	○	○	○		
	면장	○11	○11	○10	○10	○10		
장단군	군수	○	○	○	○	○		
	면장	○10	○10	○10	○10	○10		
개성군	군수	●	●	●	(府로 승격)	(府로 승격)		
	면장	○15 ●1	○15 ●1	○14 ●1			●모두 송도면	
개풍군	군수	(未)	(未)	(未)	○	○		
	면장				○15	○14		
영 양 군	청주군	군수	●	●	●	●	○	

H. 郡	보은군	면장	○17	●1	○18		○16	●1	○16		○16			●모두 청주면·읍
		읍장	(未)		(未)		(未)		●1		●1			
	옥천군	군수	○		○		○		○		○			
		면장	○10		○10		○10		○10		○10			
	영동군	군수	○		○		○		○		○		●	
		면장	○11		○11		○11		○11		○11			
	진천군	군수	○		○		○		○		○			
		면장	○7		○7		○7		○7		○7			
	괴산군	군수	○		○		○		○		○			
		면장	○14		○14		○14		○14		○13			
	음성군	군수	○		○		○		○		○			
		면장	○9		○9		○9		○9		○9			
	충주군	군수	○		○		○		○		○			
		면장	○13		○12	●1	○12	●1	○12		○12			●모두 충주면·읍
	제천군	읍장	(未)		(未)		(未)		●1		●1			
		군수	○		○		○		○		○			
	단양군	면장	○10		○10		○9		○9		○9			
		군수	○		○		○		○		○			
	면장	○6		○7		○7		○7		○7				
		공주군	군수	●		●		●		●		●		
면장	○11		●1	○12	●1	○12	●1	○12		○11			●모두 공주면·읍	
연기군	읍장	(未)		(未)		(未)		●1		●1				
	군수	○		○		○		○		○				
대전군	면장	○6	●1	○6	●1	○6	●1	○6		○6			●모두 조치원면·읍	
	읍장	(未)		(未)		(未)		●1		●1				
대덕군	군수	●		●		●		●		●				
	면장	○11	●1	○11	●1	○11	●1	○11		(府로 昇格)			●모두 대전면·읍	
대덕군	읍장	(未)		(未)		(未)		●1						
	군수	(未)		(未)		(未)		(未)		○				
논산군	면장	○		○		○		○		○				
	면장	○13	●1	○14	●1	○13	●1	○13		○13			●모두 강경면·읍+ 1930·39년 논산면·읍	
부여군	읍장	(未)		(未)		(未)		●1		●1				
	군수	○		○		○		○		○				
서천군	면장	○16		○16		○16		○16		○16				
	군수	○		○		○		○		○				
보령군	면장	○13		○13		○13		○13		○12				
	읍장	(未)		(未)		(未)		(未)		●1			●장항읍	
청양군	군수	○		○		○		○		○				
	면장	○10		○10		○9		○10		○10				
예산군	군수	○		○		○		○		○				
	면장	○11		○11		○11		○11		○11				
서산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1		○12		○12				
당진군	군수	○		○		○		○		○				
	면장	○10		○10		○10		○10		○10				
아산군	군수	○		○		○		○		○				
	면장	○12		○11		○11		○12		○12				
천안군	군수	○		○		○		○		○				

전라북도		면장	○14		○13	●1	○13	●1	○13		○13		●모두 천안면·읍
		읍장	(未)		(未)		(未)			●1		●1	
	전주군	군수	●		●		●		●		(府로 승격)		●모두 전주면·읍
		면장	○18	●1	○19	●1	○18	●1	○16				
		읍장	(未)		(未)		(未)			●1			
	원주군	군수									●		
		면장	(未)		(未)		(未)		(未)		○16		
	진안군	군수	○		○		○		○		○		
		면장	○11		○11		○11		○11		○11		
	금산군	군수	○		○		○		○		○		
		면장	○10		○10		○10		○10		○10		
	무주군	군수	○		○		○		○		○		
		면장	○6		○6		○6		○6		○6		
	장수군	군수	○		○		○		○		○		
		면장	○7		○7		○7		○7		○7		
	임실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2		○12		○12		
	남원군	군수	○		○		○		○		○		
		면장	○18	●1	○19		○19		○17		○17		●운무면 ○남원읍
		읍장	(未)		(未)		(未)		○1		○1		
	순창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2		○11		○11		
	정읍군	군수	○		○		○		○		○		
		면장	○19		○19		○19		○16		○16		●모두 정주읍
		읍장	(未)		(未)		(未)			●1		●1	
	고창군	군수	○		○		○		○		○		
		면장	○17		○17		○17		○14		○14		
	부안군	군수	○		○		○		○		○		
면장		○10		○10		○10		○10		○10			
김제군	군수	○		○		○		○		○			
	면장	○17		○16		○17		○15		○14			
	읍장	(未)		(未)		(未)			●1 (김제)		●10	●모두 김제읍	
옥구군	군수	○		○		○		○		○			
	면장	○10		○10		○9	●1	○9	●1	○9	●1	●모두 미면	
익산군	군수	●		●		●		●		●			
	면장	○17	●1	○17	●1	○16	●1	○17		○17		●모두 익산면 ●모두 이리읍	
	읍장	(未)		(未)		(未)			●1		●1		
전라남도	광주군	군수	●		●		●		●		(府로 승격)		●모두 광주면·읍
		면장	○14	●1	○14	●1	○14	●1	○12				
		읍장	(未)		(未)		(未)			●1			
	광산주	군수									○		
		면장	(未)		(未)		(未)		(未)		○11		
		읍장									●1		●송정읍
	담양군	군수	○		○		○		○		○		
		면장	○13		○13		○13		○12		○12		
	곡성군	군수	○		○		○		○		○		
		면장	○10		○11		○11		○11		○11		
	구례군	군수	○		○		○		○		○		
		면장	○8		○7		○8		○7		○7		
	광양군	군수	○		○		○		○		○		
		면장	○9		○9		○8		○8		○8		
	여수군	군수	○		○		●		●		●		
		면장	○10		○10		○9	●1	○9		○9		●모두 여수면·읍
		읍장	(未)		(未)		(未)			●1		●1	

순천군	군수	○	○	○	○	○	
	면장	○14	○13	○13	○12	○12	●1
고흥군	읍장	(未)	(未)	(未)	○1		○●순천읍
	군수	○	○	○	○	○	
보성군	면장	○13	○13	○13	○13	○13	
	군수	○	○	○	○	○	●
회성군	면장	○12	○12	○12	○12	○11	
	읍장	(未)	(未)	(未)	(未)		●1
화순군	군수	○	○	○	○	○	
	면장	○17	○17	○17	○13	○13	
장흥군	군수	○	○	○	○	○	
	면장	○11	○11	○11	○9	○9	
강진군	군수	○	○	○	○	○	
	면장	○9	○9	○9	○9	○8	
해남군	읍장	(未)	(未)	(未)	(未)		●10
	군수	○	○	○	○	○	
영암군	면장	○13	○13	○13	○10	○13	
	군수	○	○	○	○	○	
무안군	면장	○11	○11	○10	○11	○11	
	군수	○	○	○	○	○	
나주군	면장	○21	○21	○21	○20	○20	
	군수	○	○	○	○	○	
함평군	면장	○19	○19	○18	○17	○16	
	읍장	(未)	(未)	(未)	○1	○2	○모두 나주 +1939년 영산읍
영광군	군수	○	○	○	○	○	
	면장	○10	○10	○10	○9	○9	
장성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2	○12	○12	
완도군	군수	○	○	○	○	○	
	면장	○13	○13	○13	○12	○12	
진도군	군수	○	○	○	○	○	
	면장	○8	○8	○8	○8	○8	
달성군	군수	○	○	○	○	○	
	면장	○16	○16	○16	○16	○13	
군위군	군수	○	○	○	○	○	
	면장	○8	○8	○8	○8	○8	
의성군	군수	○	○	○	○	○	
	면장	○18	○18	○18	○17	○10	
안동군	군수	○	○	○	○	○	
	면장	○17	○19	○19	○15	○15	
청송군	읍장	(未)	(未)	(未)	(未)		●1
	군수	○	○	○	○	○	
영양군	면장	○8	○8	○8	○8	○8	
	군수	○	○	○	○	○	
영덕군	면장	○6	○6	○6	○6	○6	
	군수	○	○	○	○	○	
영일군	면장	○9	○9	○9	○9	○9	
	군수	●	○	○	○	○	
경주군	면장	○17	○17	○17	○15	○14	
	읍장	(未)	(未)	(未)			●모두 포항면·읍
경주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1	○11	○11	●모두 경주면·읍

	읍장	(未)	(未)	(未)		●1		●2	+1939년 갑포읍	
영천군	군수	○	○	○	○	○	○			
	면장	○14	○14	○14	○11	○10				
	읍장	(未)	(未)	(未)	(未)			●1	●영천읍	
경산군	군수	○	○	○	○	○				
	면장	○11	○10	○11	○11	○11				
청도군	군수	○	○	○	○	○				
	면장	○10	○10	○10	○9	○9				
고령군	군수	○	○	○	○	○				
	면장	○9	○9	○9	○8	○8				
성주군	군수	○	○	○	○	○				
	면장	○12	○11	○12	○10	○10				
철곡군	군수	○	○	○	○	○				
	면장	○9	○9	○9	○9	○9				
금천군	군수	○	●	●	●	●				
	면장	○19	●1	○19	●1	○19	●1	○16	○15	●모두 금천면·읍
	읍장	(未)	(未)	(未)			●1		●1	
선산군	군수	○	○	○	○	○		(次員)		
	면장	○9	○9	○9	○9	○9				
상주군	군수	○	○	○	○	○				
	면장	○18	○18	○17	●1	○17	○17	○17		
	읍장	(未)	(未)	(未)			●1		●1	●모두 상주면·읍
문경군	군수	○	○	○	○	○				
	면장	○11	○11	○11	○10	○10				
예천군	군수	○	○	○	○	○				
	면장	○10	○12	○12	○12	○11				
	읍장	(未)	(未)	(未)	(未)	○1 (예천)				
영주군	군수	(次員)	○	○	○	○				
	면장	○13	○11	○11	○11	○11				
봉화군	군수	○	○	○	○	○				
	면장	○9	○9	○9	○9	○9				
진주군	군수	●	●	●	●	●				
	면장	○18	●1	○17	●1	○18	●1	○18	○16	●모두 진주면·읍
	읍장	(未)	(未)	(未)			●1		●1	
의령군	군수	○	○	○	○	○				
	면장	○14	○14	○14	○13	○13				
함안군	군수	○	○	○	○	○				
	면장	○11	○10	○11	○10	○10				
창녕군	군수	○	○	○	○	○				
	면장	○13	○15	○14	○15	○15				
밀양군	군수	○	○	○	○	○				
	면장	○13	○13	○12	●1	○11	○11	○11		
	읍장	(未)	(未)	(未)			●1		●1	●모두 밀양면·읍
양산군	군수	○	○	○	○	○				
	면장	○7	○7	○7	○7	○7				
울산군	군수	○	○	○	○	○		●		
	면장	○19	○19	○18	○18	○15				
	읍장	(未)	(未)	(未)			●1		●1	●모두 울산읍 + 1939년 방어진읍
동래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2	○11	○10				
	읍장	(未)	(未)	(未)			●1		●1	●모두 동래읍
금해군	군수	○	○	○	○	○				
	면장	○13	○13	○13	○12	○12				

	읍장	(未)	(未)	(未)		●1 (금해)		●10	●모두 금해읍
	군수	●	●	●	●			●	
창원군	면장	○14	●1	○14	●1	○14		○14	●모두 진해면·읍
	읍장	(未)	(未)	(未)			●1	●1	
	군수	●	●	●	●			●	
통영군	면장	○15	●1	○15	●1	○15		○14	●모두 통영면·읍 +1939년 장승포읍
	읍장	(未)	(未)	(未)			●1	●1	
	군수	○	○	○	○			○	
고성군	면장	○14		○14		○14		○13	
	읍장	(未)	(未)	(未)	(未)			○1 (고성)	
	군수	○	○	○	○			●	
사천군	면장	○10		○10		○9		○9	
	읍장	(未)	(未)	(未)			●1	●1	●모두 삼천포읍
	군수	○	○	○	○			○	
남해군	면장	○8		○8		○8		○8	
	군수	○	○	○	○			○	
하동군	면장	○14		○14		○13		○12	
	읍장	(未)	(未)	(未)	(未)			●1	●모두 하동읍
	군수	○	○	○	○			○	
산청군	면장	○11		○12		○11		○11	
	군수	○	○	○	○			○	
함양군	면장	○13		○13		○13		○12	
	군수	○	○	○	○			○	
거창군	면장	○14		○14		○13		○13	
	읍장	(未)	(未)	(未)	(未)			●1	●모두 거창읍
	군수	○	○	○	○			○	
합천군	면장	○17		○18		○17		○16	
	군수	●	●	●	●				
해주군	면장	○23		○22	●1	○22	●1	○22	(府로 승격)
	읍장	(未)	(未)	(未)			●1		●모두 해주면·읍
	군수	○	○	○	○			○	
벽성군	면장	(未)	(未)	(未)	(未)			○20	
	군수	○	○	○	○			○	
연백군	면장	○20		○20		○19		○20	
	읍장	(未)	(未)	(未)	(未)			○1	○연안읍
	군수	○	○	○	○			○	
금천군	면장	○14		○15		○15		○12	
	군수	○	○	○	○			○	
평산군	면장	○14		○14		○14		○14	
	군수	○	○	○	○			○	
신계군	면장	○9		○9		○9		○8	
	군수	○	○	○	○			○	
웅진군	면장	○11		○11		○11		○10	
	읍장	(未)	(未)	(未)	(未)			○1	○웅진읍
	군수	○	○	○	○			○	
장연군	면장	○11		○11		○11		○10	
	읍장	(未)	(未)	(未)	(未)			○1	○장연읍
	군수	○	○	○	○			○	
송화군	면장	○13		○13		○13		○13	
	군수	○	○	○	○			○	
은률군	면장	○7		○7		○7		○7	
	군수	○	○	○	○			○	
인악군	면장	○9		○9		○9		○8	
	군수	○	○	○	○			●	

황해도

H1 제1군면		읍장	(未)	(未)	(未)	(未)	○1		○안악읍
	신천군	군수	○	○	○	○	○		
		면장	○14	○15	○15	○15	○14		
		읍장	(未)	(未)	(未)	(未)	○1		○신천읍
	재령군	군수	○	○	○	○	○		
		면장	○16	○16	○11	○11	○10		
		읍장	(未)	(未)	(未)	(未)	○1		○재령읍
	황주군	군수	○	●	●	○	○		
		면장	○13 ●1	○13 ●1	○13 ●1	○13	○13		●모두 검이포면·읍
		읍장	(未)	(未)	(未)		●1	●1	
	봉산군	군수	○	○	○	●	●		
		면장	○14	○13 ●1	○13 ●1	○13	○13		●모두 사리원면·읍
		읍장	(未)	(未)	(未)		●1	●1	
	서흥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2	○12	○12		
	수안군	군수	○	○	○	○	○		
		면장	○11	○11	○11	○11	○9		
	곡산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2	○12	○12			
H1 제2군면	대동군	군수	○	●	●	●	○		
		면장	○17	○16 ●1	○16 ●1	○17	○15		●모두 시족면
	순천군	군수	○	○	○	○	●		
		면장	○16	○16	○13	○9	○9		
	맹산군	군수	○	○	○	○	○		
		면장	○8	○8	○8	○8	○8		
	양덕군	군수	○	○	○	○	○		
		면장	○9	○9	○7	○7	○7		
	성천군	군수	○	○	○	○	○		
		면장	○13	○13	○12	○12	○12		
	강동군	군수	○	○	○	○	○		
		면장	○9	○9	○6	○5 ●1	○5 ●1		●모두 만달면
	중화군	군수	○	○	○	○	○		
		면장	○15	○15	○11	○11	○11		
	용강군	군수	○	○	○	○	○		
		면장	○14	○13	○13	○13	○13		
	강서군	군수	○	○	○	○	○		
		면장	○16	○16	○14	○14	○14		
	평원군	군수	○	○	○	○	○		
		면장	○18	○18	○16	○16	○16		
	안주군	군수	○	○	○	●	●		
		면장	○8	○8	○7 ●1	○7	○7		●모두 안주면·읍
		읍장	(未)	(未)	(未)		●1	●1	
	개천군	군수	○	○	○	○	○		
면장		○7	○7	○6	○6	○6			
덕천군	군수	○	○	○	○	○			
	면장	○8	○8	○8	○6	○6			
녕원군	군수	○	○	○	○	○			
	면장	○9	○8	○8	○9	○9			
H1 제3군면	의주군	군수	○	●	●	○	○		
		면장	○15 ●1	○15	○16	○15	○14 ●1		●1920년 의주면·1939년 옥황면 ○모두 의주읍
	구성군	읍장	(未)	(未)	(未)	○1	○1		
		군수	○	○	○	○	○		
태천군	군수	○	○	○	○	○			

	면장	○9		○9		○9		○9		○9			
운산군	군수	○		○		○		○		○			
	면장	○5		○5		○5		○5		○5			
회천군	군수	○		○		○		○		●			
	면장	○9		○9		○9		○9		○9			
녕변군	군수	○		○		○		○		●			
	면장	○14		○14		○14		○15		○14			
박천군	군수	○		○		○		○		○			
	면장	○11		○11		○11		○8		○8			
정주군	군수	○		○		○		○		○			
	면장	○19		○19		○19		○12		○12			
	읍장	(未)		(未)		(未)		○1		○1		○모두 정주읍	
선천군	군수	○		○		○		○		○			
	면장	○9		○9		○9		○8		○8			
	읍장	(未)		(未)		(未)		○1		○1		○모두 선천읍	
철산군	군수	○		○		○		○		○			
	면장	○8		○8		○8		○6		○6			
룡천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2		○12		○12			
삭주군	군수	○		○		○		○		○			
	면장	○6		○6		○6		○6		○6			
창성군	군수	○		○		○		○		○			
	면장	○8		○8		○8		○8		○8			
벽동군	군수	○		○		○		○		○			
	면장	○8		○7		○8		○8		○8			
초산군	군수	○		○		○		○		○			
	면장	○10		○11		○11		○10		○10			
위원군	군수	○		○		○		○		○			
	면장	○8		○8		○8		○7		○7			
강계군	군수	○		○		○		○		○			
	면장	○18		○18		○18		○16		○15			
	읍장	(未)		(未)		(未)		○1		○1		○모두 강계읍	
자성군	군수	○		○		○		○		○			
	면장	○7		○7		○7		○6		○6			
후창군	군수	○		○		○		○		○			
	면장	○5		○5		○5		○5		○5			
남연안	춘천군	군수	○		○		○		○		○		
		면장	○12		●1		○12		●1		○12		●1
		읍장	(未)		(未)		(未)		(未)		○1		○1
	인제군	군수	○		○		○		○		○		
		면장	○6		○6		○6		○6		○6		
	양구군	군수	○		○		○		○		○		
		면장	○7		○7		○6		○7		○7		
	회양군	군수	○		○		○		○		○		
		면장	○7		○7		○7		○7		○7		
	통천군	군수	○		○		○		○		○		
		면장	○8		○8		○7		○7		○6		
		읍장	(未)		(未)		(未)		(未)		○1		○고저읍
	고성군	군수	○		○		○		○		○		
		면장	○7		○7		○7		○7		○7		
		읍장	(未)		(未)		(未)		(未)		○1		○장전읍
	양양군	군수	○		○		○		○		○		
면장		○9		○9		○9		○9		○9			
강릉군	군수	○		○		○		○		○			
	면장	○13		○12		○12		○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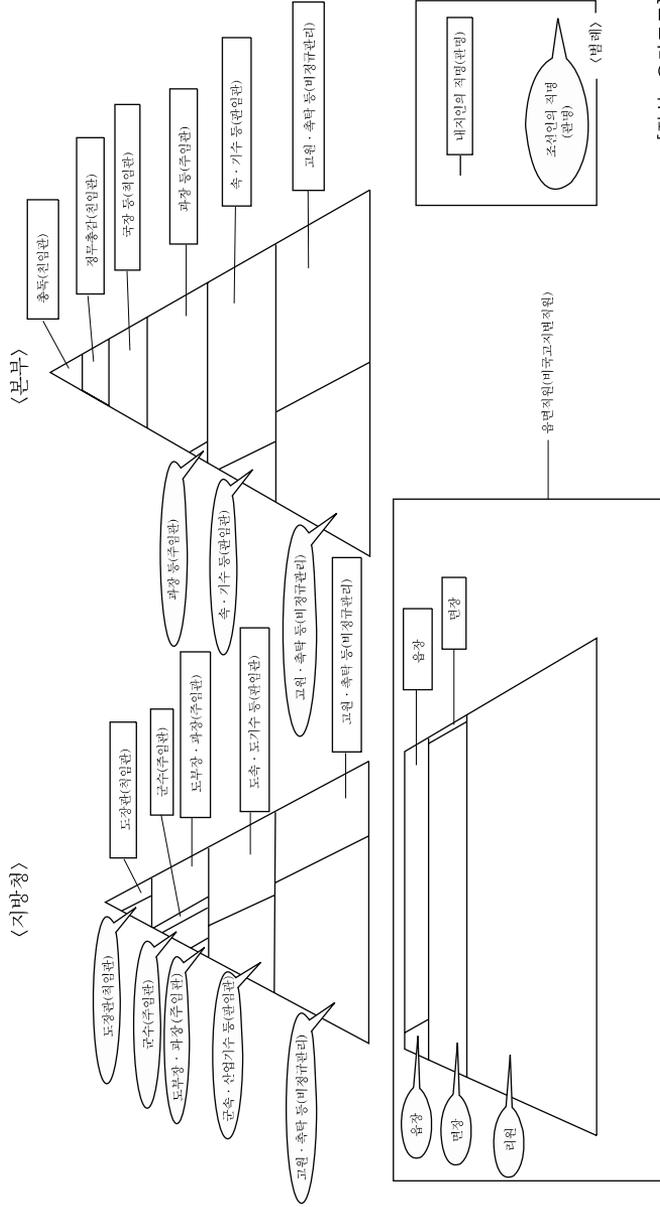
	읍장	(未)	(未)	(未)	●1	●1	●모두 강릉읍
삼척군	군수	○	○	○	○	○	
	면장	○9	○9	○9	○9	○8	
	읍장	(未)	(未)	(未)	(未)	○1	○삼척읍
울진군	군수	○	○	○	○	○	
	면장	○8	○8	○8	○8	○8	
정선군	군수	○	○	○	○	○	
	면장	○8	○8	○7	○6	○6	
평창군	군수	○	○	○	○	○	
	면장	○5	○5	○5	○7	○7	
영월군	군수	○	○	○	○	○	
	면장	○7	○7	○8	○8	○8	
원주군	군수	○	○	○	○	○	
	면장	○10	○10	○10	○10	○9	
	읍장	(未)	(未)	(未)	(未)	○1	○원주읍
횡성군	군수	○	○	(欠員)	○	○	
	면장	○8	○8	○8	○7	○8	●둔내면
홍천군	군수	○	○	○	○	○	
	면장	○9	○9	○9	○8	○9	
화천군	군수	○	○	○	○	○	
	면장	○4	○4	○4	○4	○4	
금화군	군수	○	○	○	○	○	
	면장	○12	○12	○12	○12	○12	
철원군	군수	○	○	●	●	●	
	면장	○10	○9	○9	○9	○9	●모두 철원면·읍
	읍장	(未)	(未)	(未)	●1	●1	
평강군	군수	○	○	○	○	○	
	면장	○7	○7	○7	○7	○7	
이천군	군수	○	○	○	○	○	
	면장	○10	○11	○11	○11	○10	
함흥군	군수	●	●	●	(府로 승격)	(府로 승격)	●모두 함흥면
	면장	○19	○19	○18			
함주군	군수				●	●	
	면장	(未)	(未)	(未)	○17	○15	●모두 흥남읍
	읍장				●1	●1	
정평군	군수	○	○	○	○	○	
	면장	○9	○9	○9	○9	○9	
영흥군	군수	○	○	○	○	○	
	면장	○13	○13	○13	○13	○12	
고원군	군수	○	○	○	○	○	
	면장	○6	○6	○6	○6	○6	
문천군	군수	○	○	○	○	○	
	면장	○5	○5	○5	○5	○4	
덕원군	군수	○	○	○	○	○	
	면장	○6	○6	○6	○6	○6	
안변군	군수	○	○	○	○	○	
	면장	○7	○7	○7	○7	○7	
홍원군	군수	○	○	○	○	○	
	면장	○10	○11	○11	○11	○7	
북청군	군수	○	○	○	○	●	
	면장	○17	○14	○16	○16	○12	●모두 북청면·읍
	읍장	(未)	(未)	(未)	●1	●2	+1939년 신포읍
이원군	군수	○	○	○	○	○	
	면장	○3	○3	○3	○3	○3	
서천군	군수	○	○	○	○	○	

한	신흥군	면장	○9		○9		○9		○9		○9		
		군수	○		○		○		○		○		
	장진군	면장	○8		○8		○8		○8		○8		
		군수	○		○		○		(次眞)		○		
	풍산군	면장	○7		○7		○7		○7		○7		
		군수	○		○		○		○		○		
	삼수군	면장	○5		○5		○5		○5		○5		
		군수	○		○		○		○		○		
	갑산군	면장	○8		○8		○8		○8		○8		
		군수	○		●		●		○		○		
	경성군	면장	○7		○7		○7		○7		○7		
		읍장	(未)		(未)		(未)		●1		●1		●모두 해산면
		군수	○		○		○		○		○		
	명천군	면장	○6	●1	○6	●1	○6	●1	○6		○6		●모두 라남면·읍
		읍장	(未)		(未)		(未)		●1		●1		
		군수	○		○		○		○		○		
	길주군	면장	○10		○10		○10		○10		○10		
		읍장	○		○		○		○		○		
군수		○		○		○		○		○			
성진군	면장	○7		○7		○7		○6		○5			
	읍장	(未)		(未)		(未)		●1		●1		●모두 성진읍	
	군수	○		○		○		○		○			
부녕군	면장	○7		○7		○7		○7		○5			
	읍장	(未)		(未)		(未)		(未)		●1		●모두 길주읍	
무산군	면장	○8		○8		○8		○8		○8			
	군수	○		○		○		○		○			
회령군	면장	○		○		○		○		○			
	읍장	○10		○10		○10		○10		○10			
	군수	○		○		○		○		○			
중성군	면장	○7	●1	○7	●1	○7	●1	○7		○6		●모두 회령면·읍	
	읍장	(未)		(未)		(未)		●1		●1			
온성군	면장	○		○		○		○		○			
	군수	○6		○6		○6		○6		○6			
경원군	면장	○6		○6		○6		○6		○6			
	군수	○		○		○		○		○			
경흥군	면장	○6		○6		○6		○6		○6			
	읍장	○4		○6		○5	●1	○4		○4		●모두 용기면·읍 +1935년 라진읍	
	군수	○		○		○		○		○			

군수	합계	217(+결1)	218	217(+결1)	217(+결1)	217(+결1)				
	○조선인 군수 수 (%)	○ 201 (92,6)	● 16 (7,3)	○ 193 (88,5)	● 25 (11,5)	○ 189 (87,1)	● 28 (12,9)	○ 189 (87,1)	● 28 (12,9)	○ 186 (85,7)
면장	합계	2469	2475	2434	2324	2248				
	○조선인 면장 수 (%)	○2447 (99,1)	● 22 (0,9)	○2448 (98,9)	● 27 (1,1)	○2401 (98,6)	● 33 (1,4)	○2321 (99,9)	● 3 (0,1)	○2245 (99,9)
읍장	합계	(未)	(未)	(未)	49	68				
	○조선인 읍장 수 (%)	(未)	(未)	(未)	○ 7 (14,3)	● 42 (85,7)	○ 18 (26,5)	● 50 (73,5)		

주1. 「(결원) 은 군은 존재하지만 군수의 기재가 없는 것, 「(未) 는 군·읍이 미설치된 것을 가리킴.  
 주2. 이 표는 『舊植民地人事總覽』朝鮮編(日本圖書센터, 1997년)의 해당 년도의 직원록에서 岡本가 산출하여 작성함.  
 주3. 이 표의 면장은 '군에 설치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외 島에도 면장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표에서는 제외함.

【자료 22】 조선총독부 본부·지방청 직원 계승도(1935년경)



## [비평문]

류승렬

본고는 조선총독부 소속 중앙 및 지방 관청 관료의 민족별 구성에 대한 연구이다. 필자가 곳곳에서 ‘기초적 분석’·‘기초적 스케치’라고 단정한 바와 같이 특정 시점의 조선총독부 소속 일부 관료에 대하여 한·일인별 직급별 구성을 비교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국 측에 이미 연구가 있는 바, 이들에 주목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가 종래 연구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채로 특정한 또는 개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왔다는 지적은 적절하다. 아울러 일제 패망까지 식민지 조선의 “내지인 관료와 조선인 관료는 대등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근무하는 하루하루 속에서 민족 격차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조선인 관료도 상당수 있었지만 상층부는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었음을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주목된다.

필자는 그동안 ‘제국일본’적 접근과 달리 식민지의 독자성에 주목하면서 조선인 관료, 의원 조선 근무 일본 본토인 관료(‘在來者’), 본국과 총독부로 대변되는 식민지배 기구의 관계 및 이에 따른 식민통치 협력자들의 양태 분석 등에 새로운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연구자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의에 비추어 일본의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식민지 정치사’의 구체적인 개념과 함의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궁금하다. 또한 식민본국(일본)과 식민지 조선을 가교하는 정치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침략의 본격화에 따른 제국의 확대로 일본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지역적 배치가 다원화·중층화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런 변화를 조선에 적용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필자는 식민지 관료를 ‘식민지 정치’의 주요한 역할자로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식민지 정치의 주체는 식민본국-총독부-일본인 관료-조선인 관료-지방의회 참여자-지역 유지층 등으로 다층적이며 각각의 역할과 각 계층에서 나타는 특징도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주로 식민본국-총독부-일본인 관료 및 조선인 관료 사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주목하는 듯하다. 사실 그러한 접근은 식민정책을 둘러싼 통치 참여자들의 논의라는 제한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식민지 정치사’의 범주와 연구 대상 및 방법이 보다 명확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대만사 연구에 적용되는 식민지 정부, 식민지 정권 등의 용어와 개념을 식민지 조선에도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식민지 조선과 대만과의 공통성과 차이에 대하여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구조를 고려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치적 행위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권력’의 문제는 필수적이며 참가·참여를 통해 교섭의 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집필자 답변]

비평문에, 전반부에는 줄고 자체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줄고를 넘어서 필자의 이제까지의 연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 줄고에 대한 비평으로는 한국 측의 기존 연구에 대한 주목 부족이 지적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줄고의 주 3과 4에 나와 있는 2008·2009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식민지 관료에 관한 두 권의 서적에 한국에서의 연구 성과도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불친절하다는 혐의는 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줄고의 주안점은 식민지 관료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심화되는 한편으로, 줄고의 ‘머리말’에서 지적하였고 비평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종래 연구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채로 특정한 또는 개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왔’던 점의 극복 내지는 보완이다. 특히 조선인 관료에 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심화되었고, 그 중에서도 1930년대 후반 이후 전시체제가 조선인 관료의 중대가 클로즈업되어 있는데, 일본인 관료도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 간과되어 온 것 - 근저에는 지배 체제에 있어 관료 조직의 팽창이 있다-, 그리고 양자의 관계가 총력전 체제기에도 어디까지나 대등 평등하지 않은 채로 움직여 나갔다는 것을 확인하여 두고 싶었다. 또 시기가 한정되기는 하지만, 일본인·조선인 양자의 민족 구성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후 연구의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후반부는 줄고 자체가 아니라 필자의 기존 연구를 읽고 나서의 평가와 제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 적절할지 어떨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식민지 정치사’에 관해서는 줄고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줄고만 읽고 난 다음 비평문을 읽을 경우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당장 응답하여 둔다면, 주 2의 논고(2009년 12월 간행 예정)에서 현재 나 나름의 정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종래의 ‘식민지 정치사’에서 체제에 ‘참가’·‘참여[參入]’를 달성한/지향한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어 온 것이 내포하는 문제성, ‘참가’·‘참여[參入]’에서 배제된 방대한 사람들을 시야에 넣으면서 고찰할 필요 등을 지적하고 또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선·대만의 고유의 역사적 문맥을 고려할 필요성 등을 논한 것이어서 참조하여 주신다면 다행이겠다. 이 외에 ‘식민본국(일본)과 식민지 조선을 가교하는 정치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필자의 이제까지의 주장이기도 하며 이후 실증을 쌓아 나가야 할 필요성에 동의한다. 또, ‘침략의 본격화에 따른 제국의 확대로 일본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지역

적 배치가 다원화·중층화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런 변화를 조선에 적용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라는 점인데, 필자의 종래 연구에서 대만과의 상관관계도 시야에 넣으면서 조선의 위치와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하여 오고 있어서 '다원화·중층화'되는 구조에 대한 해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또 한국의 연구자 중에서도 그러한 연구가 서로 축적되기를 기대한다.